연구보고서 2006-2

보험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

2006. 04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 리 말

1980년대 말 시장 개방 이후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강화되었다. 경쟁이 강화되면 생존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탈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퇴출은 최종적인 시장규율로서 유효경쟁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시장에서 퇴출, 특히 보험시장과 같이 규제된 시장에서 비자발적 퇴출(involuntary exit)은 보통 공적자금이나 보험보증기금 등이 투여되면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생명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되면서 막대한규모의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투여된 바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대규모 퇴출과 200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퇴출을 각각 독립된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시장 퇴출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순천향대학교 김헌수 교수가 수행하였다.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김헌수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6년 4월

보 험 개 발 원

원 장 김 창 수

목 차

요 약 ····· 1

Ⅰ. 연구 배경과 목적 ····· 11

1. 연구 배경 ····· 11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 16

Ⅱ. 선행연구 ····· 18

1. 시장 퇴출에 관한 일반 연구 ····· 18
2. 보험시장 퇴출 연구 ····· 19
3.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파산 연구 ····· 22

Ⅲ.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 분석 ····· 24

1.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과 개방 ····· 24
2. 퇴출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의 변화 ····· 36
3. 퇴출 생명보험회사 분석 ····· 46

Ⅳ.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 분석 ····· 63

1. 미국 보험시장 퇴출 현황과 제도 ····· 63
2.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67
3. 미국 보험시장의 퇴출에 대한 실증 분석 ····· 74
4.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 91

Ⅴ. 퇴출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 95

1. 연구결과 요약 ····· 95
2. 퇴출관련 제도 개선의 시사점 ····· 98

< 참고 문헌 > ····· 105

< 부록 > ····· 111

1. 부록1: 신설 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 ····· 111
2. 부록2: 국내 생명보험회사 진입 퇴출 연혁 ····· 126
3. 부록3: 보험회사 시장 퇴출에 관련된 법규 ····· 128
4. 부록4: 분석에 사용된 퇴출 손해보험회사 리스트 ····· 143

< 표 차례 >

<표 I-1> 1990년대 이후 퇴출 보험회사와 공적자금 투여 금액 ····· 13
<표 I-2> 퇴출 형태의 특성 비교 ····· 15
<표 II-1> 미국 보험회사의 부실 원인에 관한 연구 결과 ····· 21
<표 III-1> 국민총생산과 1인당 GNP(GNI) 추이 ····· 25
<표 III-2> 1인당 및 가구당 생명보험 보유계약 추이 ····· 26
<표 III-3> 외국생명보험회사 국내 진입 현황 ····· 27
<표 III-4> 합작사 설립 현황과 소유 지분 구조 ····· 28
<표 III-5> 신설 전국사의 허가 평가 항목 및 가중치 ····· 30
<표 III-6> 전국사 설립현황 ····· 35
<표 III-7> 지방사 설립현황 ····· 36
<표 III-8> 지급여력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1994. 6) ····· 39
<표 III-9> FY93년 지급여력 기준 미달사 현황 ····· 40
<표 III-10> 지급여력제도의 보완 (1996. 2) ····· 41
<표 III-11> 지급여력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1996. 2) ····· 42
<표 III-12> 재무건전성(지급여력) 규제의 주요 변화 ····· 45
<표 III-1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 부족액 추이 ····· 49
<표 III-14> 기존사의 준비금대비 실재자산 비율 ····· 50
<표 III-15> 퇴출사와 생존사의 실재자산 비율 비교 ····· 53
<표 III-16> 지방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 54
<표 III-17> 전국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 55
<표 III-18> 합작사의 실제 자산 비율 추이 ····· 56
<표 III-19> 외국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 56

<표 III-20> 생명보험회사 퇴출 현황과 공적자금 투여 여부 ····· 57
<표 III-21> 모기업 특성과 신설사 생존 현황 ····· 58
<표 III-22> 합작사의 지분구조와 퇴출 여부 ····· 60
<표 III-23> 대한생명의 부실 발생 원인과 손실 금액 ····· 61
<표 IV-1> 미국 보험시장의 퇴출 빈도 (1981-2000년) ····· 63
<표 IV-2> 미국시장에서 비자발적 퇴출 보험회사 연도별 현황 ····· 64
<표 IV-3> 미국 RBC 기준에 의한 규제 내용 ····· 68
<표 IV-4> 미국 생명보험회사 RBC 조치 적용비율 추이 ····· 69
<표 IV-5> 미국 손해보험회사 RBC 조치 적용비율 추이 ····· 70
<표 IV-6> 미국 건강보험회사 RBC 조치 적용비율 추이 ····· 70
<표 IV-7> FAST Scoring System 사용 변수 ····· 73
<표 IV-8> 일차적으로 사용한 총 독립변수 ····· 79
<표 IV-9> 기술적 분석 자료 ····· 83
<표 IV-10>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 85
<표 IV-11> 일차 다항로짓모형 변수별 검정 결과 ····· 87
<표 IV-12> 최종 다항로짓모형 우도비 검정 결과 ····· 87
<표 IV-13>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 1 ····· 88
<표 IV-14>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 2 ····· 89
<표 IV-15>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 3 ····· 90
<표 IV-16>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 4 ····· 91
<표 IV-17> 퇴출형태간 오즈비($\frac{\pi_i}{\pi_0}$) 결과 요약 ····· 92

<그림 차례>

<그림 I-1> 본 보고서의 구성 내용 ····· 17
<그림 III-1> 신설 생명보험회사 특성과 생존 및 퇴출 지도 ····· 59

요 약

I. 연구 배경과 목적

□ 경쟁적인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퇴출은 필요악으로 볼 수 있지만 대개 공적자금 등이 투여되는 비자발적 퇴출(involuntary exit)은 보험소비자와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진입한 신설 생명보험회사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 부실화되어 퇴출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된 바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대규모 퇴출과 200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퇴출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임.

II. 선행연구

□ Bain(1956) 이후 수많은 퇴출연구 중 Schary(1991)는 시장퇴출을 합병, 자발적 청산 및 파산이라는 이질적인 형태로 구분하고, 퇴출 형태는 수익성보다는 기업 특성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함.

□ 본 연구의 방법론과 궤를 같이 하는 BarNiv and Hathorn(1997)은 비자발적 퇴출의 대안으로 합병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고, Hall(2000)은 청산을 통한 퇴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함.

□ A.M Best(2003)는 미국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부실 원인을 준비금

부족(18%), 관계회사 부실(16%), 과도한 성장(12%) 및 자산운용 실패(11%)로 분석함.

○ London Working Group(2003)은 EU에서 발생한 파산 보험회사 115개와 파산에 근접한 155개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경영 관리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파산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함.

○ 일본의 경우 파산의 주요 원인은 무리한 외형성장 전략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 경쟁 심화 및 보험수요 축소로 평가됨.

□ 국내 생명보험회사 파산원인에 대하여 이순재와 김재현(2003)은 효력상실 해약율과 부채구성 안정성을 가장 유의성이 큰 변수로 보고하였음.

○ 금융감독원(2003)은 생명보험회사 부실의 중요한 원인을 이익창출 능력과 자본조달 능력의 부재로 보고하면서 부실사 중·소형사는 영업부문에서 대형사는 자산운용 부문에서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고함.

III.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 분석

□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허가 기준에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 출자, 지방본사 및 금융전업 등이 강조되면서 신설사의 생존에 직결된 출자능력과 경영능력 등의 상대적 비중은 떨어짐.

신설 전국사의 허가 평가 항목 및 가중치

항 목	가 중 치
금 융 전 업	20%
개 인 출 자	16%
지 방 본 사	16%
출 자 능 력	16%
경 영 능 력	16%
출자의 건전성	16%
합 계	100%

□ 1990년 이전의 퇴출과 관련된 재무건전성 규제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험업법상에 존재했었고, 1990년에는 계약자 배당의 전제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

○ 1994년 처음으로 “지급여력제도”가 제정되었으며, 1996년 규정이 완화되면서 개정되었고, 1999년 EU방식의 비율규제로 전환하였음.

재무건전성(지급여력) 규제의 주요 변화

구분	관련 규정	세부 내용
90년 이전	보험업법 제6조와 제15조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없음.
90.3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준칙>의 일부로 제정	매 사업년도말 일정금액 이상의 담보력을 확보해야 계약자배당 할 수 있도록 규정
94.6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	최초로 지급여력제도 도입 및 인정항목 신설, 매사업년도말 100억원 이상의 지급여력 확보 의무화 미달금액에 따른 3단계 제재조치
96.2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 - 지급여력 기준 완화	매사업년도말에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1%이상”의 지급여력 확보 의무화
98.6	보험감독규정의 통합 적기시정조치 기준 도입	제25조(지급여력 확보기준)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 비율이 0% 초과되도록 의무화 .부족비율: 0-1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부족비율: 10-2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부족비율: 20% 이상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99.5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도입	종전의 0%이상의 지급여력 확보기준을 지급여력기준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강화 . 비율: 50%-10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 비율: 0%-5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 비율: 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00.8	지급여력 적용 대상확대	외국 생명보험회사 국내지점도 지급여력비율 적용
현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및 명령권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 명기 경영실태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적기시정조치 규정 경영실태평가 평가 항목과 가중치 규정

□ 1980년대말 이후 신설된 생명보험회사는 내실영업보다는 외형확대로 경영전략을 설정하면서 지급여력 부족분은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FY95년 총 지급여력 부족액은 12,03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지급여력 미달사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당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생명보험회사는 없었음.

□ 신설사 중 퇴출 생명보험회사와 생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실재자산 비율((총자산-이연자산)/ 해약식 책임준비금)로 비교한 결과 사업 1년차부터 9년차까지 지속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3년차부터 퇴출 시점까지 두 그룹의 실재자산비율의 차이는 통계적(t검정 결과)으로 유의함.

○ 퇴출된 신설 생명보험회사는 사업개시 이후 한 번도 실재자산비율이 개선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제재가 진작에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신설사중 퇴출사와 생존사의 실재자산 비율 비교 (%)

	부실 퇴출 신설사[1)]		생존 신설사[2)]	
	전체 평균	외국사 제외 평균	전체 평균	외국사 제외 평균
1년차	246.3	245.3	32,367	413.9
2년차	111.6	106.4	2,987	115.5
3년차	109.8	97.8	834.6	107.1
4년차	95.2	89.6	293.9	101.0
5년차	91.8	86.4	197.7	94.1
6년차	91.0	85.3	146.4	96.3
7년차	90.0	83.7	111.8	94.7
8년차	83.9	78.5	96.9	94.2
9년차	다수 퇴출	다수 퇴출	95.9	94.4

주: 1)퇴출 생명보험회사(13개) : 대구(조선),경남(두원),중부(국제),전북(BYC),충북(태양),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고려CM, 삼신Allstate, ALICO
2)생존 생명보험회사(10개):부산(럭키),광주(금호),대전(SK),신한,동부애트나(동부),동양베네피트(동양),코오롱메트(메트라이프),영풍매뉴(PCA),LINA,푸르덴셜

자료 : 보험통계연감 (1988년 - 1998년)을 기준으로 계산

□ 퇴출 신설사와 생존 신설사를 소유구조로 분석한 결과 모기업이 부실한 경우에는 전부 퇴출하였고, 모기업 규모가 소규모(30대 대기업 집단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퇴출하였음. 이는 생명보험회사 모기업인 산업자본의 흥망이 자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시장 진입과 퇴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함.

IV.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 분석

□ 미국 보험회사의 시장 퇴출은 연방정부가 아닌 개별 주에서 결정하는 데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 의사결정은 통상 리스크기준자본금(RBC) 규제에 의해서, 부실 보험회사에 선별과정 및 분석은 FAST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음.

□ 시장퇴출 형태와 보험회사 특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6년간 재무제표 (1999년부터 2004년)를 활용함.

○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높은 독립변수를 추출한 후 다항로짓회귀분석(multilogistic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퇴출형태(종속변수)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를 파악함.

□ 다항로짓분석 결과 Ln(자산), IRIS2(순보험료/잉여금), IRIS6(자산운용수익율), ROA(순수입/총자산)이 유의한 독립변수로 검증됨.

○ 퇴출 형태간 오즈비(odd ratio)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든 경우에 존재하고 퇴출형태간의 오즈비 차이도 가장 큰 변수는 Ln(자산) 이었음.

○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M&A 퇴출'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

음은 '시장 존속', '자발적 퇴출' 순이었으며 '비자발적 퇴출'의 가능성은 가장 낮았음.

○ 이 결과는 비자발적으로 퇴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일치함.(Kim, 1995; Barniv and Hathorn, 1997)

□ IRIS2는 보험회사의 인수레버리지를 나타내는데 IRIS2의 증가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 퇴출 가능성이 M&A 퇴출 가능성보다 높아졌고, M&A 퇴출 가능성은 시장 존속 가능성보다 높았음.

○ 이 결과는 보험회사의 안정성(인수레버리지)과 퇴출형태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며, 본 보고서의 한국 생명보험회사 퇴출 분석에서도 안정성이 악화되면 퇴출(비자발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유사한 결론을 얻었음.

□ IRIS6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이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자발적 퇴출 가능성이 시장 존속 가능성보다 21.5%정도 높았고, M&A 퇴출 가능성은 자발적 퇴출 가능성보다 3.3% 높았음.

○ 이 결과는 시장 퇴출이 임박한 보험회사들의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제고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V. 퇴출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 부실 보험회사가 적기에 퇴출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먼저 현행 지급여력금액 계산시 기준을 파산시'여력'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항목만을 중심으로 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급여력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부채실사 제도를 부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실사와 정상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부문'실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적기시정조치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순자산액 규제(순자산액이 마이너스이면 부실 보험회사로 지정)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동발동방식인 적기시정조치에 비계량적인 경영리스크나 지배구조 리스크에 의해서도 감독기관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소유구조가 생명보험회사 퇴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기관중 장기상품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 정보비대칭 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기구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현재 비공개(비상장) 상태라는 점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의 축인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 밖에 있는 모기업의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회사 자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 투여액을 줄이고 퇴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영실태평가 기능을 미국의 FAST 시스템처럼 확대 및 세분화하여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 기능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분석 도구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질적인 분석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I.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가. 시장 퇴출과 보험산업

보험산업에서 진입과 퇴출(entry and exit)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산업조직론 이론에서는 진입에 대한 장벽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할수록 기존 회사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하지만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는 보험의 특성, 보험회사업의 정보비대칭과 도덕적 해이의 존재, 금융기관으로서 보험회사의 성격 등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확률을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는 최소 자본금(minimum capital) 등 재무 규제 외에 대주주 적격성(proper & fit test)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1)]

시장 퇴출과 시장 진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Bain (1956)이 반세기 전에 지적했듯이 퇴출 장벽도 경쟁적 시장의 주요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즉 시장 퇴출에 대한 '장벽'이 높을수록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참여자의 퇴출을 지연시켜 시장 효율성을 악화시키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퇴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크게 진입 심사와 같은 사전적 규제

1) 진입에 대한 규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Skipper(1997) 및 IAIS(2003)를 참고할 것.

(ex ante regulation)와 재무건전성 감독과 같은 사후적 규제(ex post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규제는 규제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 외에 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부실가능성이 있거나 생존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규제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존사의 이익(rent)을 증가시키는 반시장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방경제 구조하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험 산업 감독정책의 축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였다. 즉, 사전적 규제를 줄여 보험시장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반면, 부실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는 사후적 규제로 감독 및 감시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감독방식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보험회사가 전혀 없도록 감독하겠다는 것 보다는 최적 퇴출 규모(optimal exit size)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시장에서 아무도 퇴출하지 않는 것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 규제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은 진입 규제의 경우 준칙주의 원칙 하에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사후규제의 경우 재무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s)와 감독당국의 직접 감시(on-going supervision)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부실한 보험회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나. 국내 보험회사 퇴출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보험시장은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었지만 1987년부터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들도 신규로 보험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시장개방 전 6개뿐이었던 생명보험회사의 숫자는 1993년에는 33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2]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 진입한 많은 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은 무리한 외형성장과 부족한 자금력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수의 신설사가 보험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표 I-1> 1990년대 이후 퇴출 보험회사와 공적자금 투여금액

구분	퇴출 보험회사	퇴출 내용	공적자금 투여액 (억원)	퇴출 연도
생명보험회사	국제(중부)생명	삼성생명으로 계약이전	4,736	1998
	태양(충북)생명	흥국생명으로 계약이전	2,796	1998
	고려(고려CM)생명	제일생명으로 계약이전	2,088	1998
	BYC(전북)생명	교보생명으로 계약이전	2,638	1998
	조선(대구)생명	한국생명(현대생명)에 피합병	1,277	2000
	동아생명	금호생명에 피합병	14,387	2000
	태평양생명	동양생명에 피합병	3,300	2000
	국민생명	SK 생명에 피합병	7,301	2000
	한덕생명			2000
	두원(경남)생명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	12,265	1999
	현대(한국)생명			2001
	삼신Allstate			2001
	대신생명	녹십자그룹으로 피인수	1,393	2003
	대한생명	국영, 최종적으로 한화그룹에 피인수	35,500	2000
	ALICO생명	아메리카생명으로 계약이전	비투여	1997
	Georgia생명	네덜란드생명으로 계약이전	비투여	1992
	AFLAC생명	교보생명으로 계약이전	비투여	1991
	한일생명	국민은행으로 피인수	262	2004
	SK생명	미래에셋에 피인수	비투여	2005
손해보험회사	대한화재	대한시멘트에 매각	510	2001
	국제화재	근화제약에 매각	740	2002
	리젠트화재	동양,삼성,현대,,LG,동부로 계약이전	2,386	2002
보증보험회사	대한보증	서울보증보험으로 피합병	102,500	1998
	한국보증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www.publicfund.go.kr)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1990년대 이후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의 퇴출은 외국사의 지점

2) 93년 이후 97년에 아메리카생명(00년에 AIG생명으로 상호변경)이 진출하였고, 01년 카디프생명이 설립되었으며, 방카슈랑스 전문보험회사로 02년 SH&C 생명과 04년 KB생명(한일생명 인수)이 각각 설립되었음.

(AFLAC, 조지아, ALICO생명)을 제외하고는 자발적 시장 퇴출은 사실상 거의 없었고 정부로부터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비자발적 퇴출이 대부분이었다.[3]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출한 보험회사로 인한 비용은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98년 이후 보험산업에 투여된 공적자금만 해도 2003년도말 현재 자본출자 15조9천억원 등 총 19조4천억원에 달한다(보증보험 제외시 9조1천5백억원)[4]. 이 막대한 보험시장 퇴출 비용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과 감시감독이 있었다면 경감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 이러한 공적자금의 최종부담자는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이 막대한 비용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 퇴출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보험회사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영미식 규제방식과 다른 방식의 퇴출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 형태

1990년대 국내 보험회사의 퇴출은 대부분 정부 주도에 의한 비자발적 퇴출이었지만 미국 보험시장의 경우 매년 수십 개의 보험회사가 인수 및 합병(merger and acquisition:M&A), 자발적 청산(voluntary

---

3) 이렇게 부실 생명보험회사가 비자발적으로 퇴출하는 (정부가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정리) 경우 정리하는 형태로는 매수자나 나타나서 직접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M&A방식 외에도, 피인수기관의 일부분만을 인수하는 P&A(purchase & assumption)방식,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을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는 자산분리방식, 계약이전 및 지분매각 방식 등 다양한 부실기관 정리 방식이 있다.

4) 퇴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외에 보증보험회사에 투여된 공적자금 10조2천5백억원은 은행 등 금융권의 도산 방지와 안정화를 위해서 투여되었다는 점에서 보증보험회사의 퇴출 비용이기 보다는 금융권 전체의 회생 비용으로 볼 수 있다.

liquidation), 비자발적 청산(involuntary liquidation)의 형태로 시장에서 퇴출한다. 이중 자발적 청산이나 인수 및 합병에 의한 시장 퇴출은 대부분 시장 규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이 없지만 비자발적 청산의 경우 퇴출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ee Fund)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보험소비자 또는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된다. 비자발적 퇴출보다는 자발적 퇴출이나 M&A에 의한 퇴출이 보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2> 퇴출 형태의 특성 비교

	합병과 인수 (M&A)	**자발적 청산** (voluntary liquidation)	**비자발적 청산** (involuntary liquidation)
정 의	타기업에 대상기업이 인수되거나 합병되어 시장에서 퇴출됨.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식임.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보험회사를 청산시키는 방식임.
주요 의사 결정자	주로 경영자이지만 감독기관의 유도에 의해서 M&A되기도 함.	경영자(이사회)가 결정하지만 감독기관 동의 필요함.	감독기관(주 보험청장)이 결정함.
장 점	주주에게 높은 보상 가능. 계약자 동의 불필요. 보험보증기금 불사용. 재활의 도구로 M&A 가능함.	보험보증기금 불사용. 신속한 시장 탈출 가능함. closely-held된 회사는 잔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부실정도가 심각한 기업에 대한 신속히 대처로 소비자 전체에 대한 피해 최소화 추구함.
단 점	협상 시간 및 과정상 문제 발생. 협상과정에서 계약자 및 채권자의 소외. 합병이후의 내부갈등.	주주,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필요함. 적절한 유동성이 있어야 가능함. closely-held된 회사의 경우 정보비대칭 문제 발생 가능성.	감독기관의 능력 및 성향에 따라 퇴출비용, 속도 달라짐. 재활하기가 어려움. 기업성종목 계약자의 높은 피해. 보험보증기금 사용함.

<표 I-2>는 퇴출 형태 대안의 장단점과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보험회사가 M&A를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경우 주주는 높은 프리미엄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발적 퇴출의 경우에도 주주 입장에서 시장에 존속하는 경우 얻는 이득보다는 퇴출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출은 주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거나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독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것이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퇴출시키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재 보험시장에서 시장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퇴출 형태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M&A와 자발적 청산의 경우 경영자가 퇴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자발적 청산의 경우 감독기관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퇴출형태는 아니지만 그 중간과정에 있는 것으로 재활(rehabilitation)이 있다. 재활은 감독기관의 관리를 통해서 부실 보험회사를 정상 기업으로 '재활'시키려는 목적이 있지만 통상 청산(liquidation)되거나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된다.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이 보고서는 보험시장 퇴출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련된 그러나 독립된 연구를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 퇴출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의 연구를 정리하고 III장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보험시장 퇴출인 1990년대말 생명보험회사의 퇴출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연구(예: 이순재와 김재현, 2003; 금융감독원, 2003)가 파산의 원인 변수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1990년대말 생명보험회사의 대규모 파산의 원인인 1980년대말 시장진입(허가) 정책의 평가, 생명보험회사 시장진입 후 사후 규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시장 퇴출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IV장에서는 Schary(1991)과 BarNiv and Hathorn(1997)을 출발점으로 하여 보험시장의 퇴출 형태를 4가지로 규정하고 퇴출 형태와 보험회사

의 특성 및 보험시장 환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IV장의 분석에서는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III장과 IV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V장에서는 국내 보험시장 퇴출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I - 1> 본 보고서의 구성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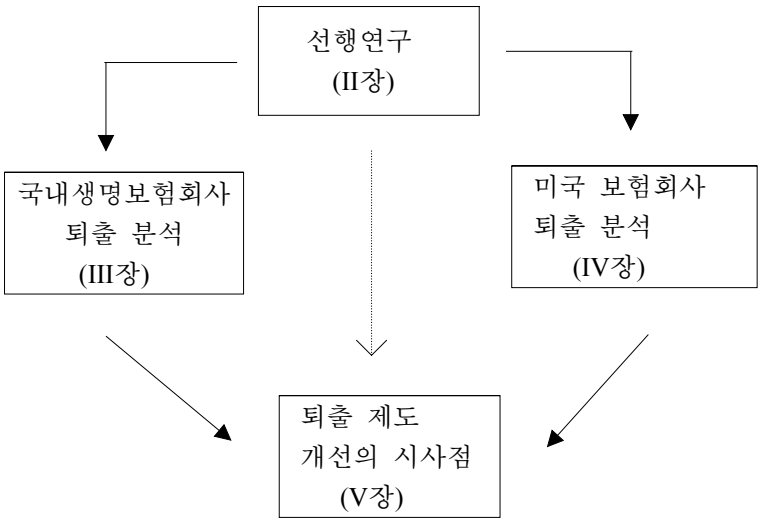

II. 선행연구

경쟁시장에서 시장참가자 진입의 의미 및 진입 장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시장참가자의 퇴출에 관한 연구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최근까지 보험학 및 재무학 분야에서 퇴출에 대한 연구는 M&A 및 파산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어 퇴출 형태와 퇴출 보험회사의 특징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없었다. 본 장에서는 퇴출과 관련된 경제· 경영학자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 보험시장에서의 퇴출관련 연구 결과, 그리고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퇴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1. 시장 퇴출에 관한 일반 연구

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산업조직론 학자들에 의해서 시장 진입에 관한 연구의 일부처럼 다루어져 왔다. Mathewson and Stiglitz(1986)와 Tirole(1995)에서 정리되었듯이 경쟁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진입 및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Bain(1956)의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Baumol 외(1982) 및 Bernheim(1984) 등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Baumol 외(1982)는 주목해야 할 연구로 진입 및 퇴출장벽과 거래비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공급자로서 최상의 효율적인 시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이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규제산업인 보험시장에서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이론이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재보험시장 등 일부 시장은 이러한 이론적 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전에는 퇴출 및 퇴출장벽에 관한 독립된 연구는 많지 않고 진입장벽과 관련하여 일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Eaton and Lipsey, 1980) 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 실증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unne 외(1988)는 미국 제조업계의 공장 퇴출형태를 진입율과 퇴출율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조사하였으나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위한 사실적 기반만을 제공하는데 그쳤고, 같은 맥락에서 Deily(1991)는 철강회사들의 공장폐쇄 결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공장별 특성이 공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Kongsted(1996)는 불확실성하의 진입 및 퇴출 결정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결정적 한계를 설정하였고, Paech(1998)는 경쟁 시장적 접근을 통해 퇴출비용은 시장 규율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시장퇴출에 대한 독립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나타나고 있다. Matthyssens 외(2000)는 세계시장에서의 시장퇴출 사례연구를 통해 시장퇴출을 유인하는 심리적 현상과 과정들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Karakaya(2000)는 퇴출장벽은 수익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퇴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며 막강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Schary(1991)의 연구는 시장퇴출이 동질적인 것은 아니며, 합병, 자발적 퇴출(청산) 및 비자발적 퇴출(파산)이라는 이질적인 형태로 구분한 점에서 구별되며 이러한 퇴출형태는 퇴출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Schary의 연구는 본 보고서(특히, IV장) 분석의 출발점으로 볼수 있다.

2. 보험시장 퇴출 연구

보험시장에서의 퇴출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수합병과 파산(지급불능)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합병과 인수에 관한 연구는 퇴출된 회사의 관점이 아닌 매수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본 연구와 거리가 있다. 이 연구와 유사한 맥을 가진 BarNiv and Hathorn (1997)은 지급불능을 피하기 위한 동기로 합병을 택한다는 전제하에 합병과 지급불능의 두 가지 다른 형태를 선택하는 차별적인 요인이 있음

을 회계·재무 정보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였다. 퇴출의 한 형태로서 인수합병을 선택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인수자나 인수대상자 모두 합병발표로 긍정적인 가격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Akhigbe and Madura(2001)는 발견하였고, 합병발표의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보험회사의 유형, 규모,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Hall(2000)은 청산을 통한 시장퇴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험보증기금에 환수되는 지급불능 보험회사의 자산매각대금이 파산이전 자산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으며, 낮은 환수율은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제시했다.[5)]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경우 미국 각 주(주)의 보험보증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3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보험금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보증기금의 기능이 퇴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Lee 외(1997)에 의해서 감시 가설(monitoring hypothesis)과 리스크보조금 가설(risk-subsidy hypothesis)로 설명되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보증기금의 존재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이(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퇴출의 선택에 있어서 구태여 인수합병을 선택하지 않고 강제적 청산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기존 보험시장 퇴출연구에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파산연구이다. Altman(1968)의 '기업파산의 예측에 관한 연구' 발표 이래 Trieschmann and Pinches(1973)를 시작으로 보험회사의 파산예측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파산예측 연구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파산모형을 제시하고 부실보험회사 판별의 정확성을 측정하

---

5) 은행산업의 규제에 있어 자발적 청산을 택하는 주된 이유는 강제적 청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발적 청산의 경우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의 일부를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은 감독부담, 갈등, 비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제기된 이사들과 임원들에 대한 소송을 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Grebenar, 1992)

는 것이 대부분이다. 파산예측에 다변량 판별분석을 사용한 연구로는 Trieschmann and Pinches(1973), Cooley(1975), Cheong and Skipper (1988), BarNiv and Hershbarger(1990) 등이 있으며, Harrington and Nelson(1986)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BarNiv and Smith(1987)는 평균·분산 순위법을 사용하여 파산예측을 시도하였다. 그 외에 포트폴리오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로는 Hammond and Shilling(1978), Kahane (1978), Venezian(1983), Kahane 외(1986) 등이 있다.

한편 1990년대가 되면서 파산예측 모형에 대한 연구와 함께 파산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Brown외(1999)는 미국 생명보험 회사들의 파산원인을 외생적·거시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Carson and Hoyt(2000)는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변수들을 규명하였다.

<표 II-1> 미국 보험회사의 부실 원인에 관한 연구 결과

(단위:%)

주요 부실 원인	생명보험회사 ('76 ~'00)	손해보험회사 ('71 ~'01)
준비금부족(낮은 가격)	18	41
과도한 성장	12	7
자산운용 실패	11	3
관계회사 부실	16	8
사기(추정)	7	5
사업의 중단	-	9
사업의 중대 변화	4	1
재보험 실패	2	-
거대 재해 손실	1	8
기타	28	18
미확인 요인	2	-

자료 : 금융감독원(2003) 재인용, A.M Best(2002, 2003)

AM Best(2002,2003)는 1971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보험회사 파산 원인을 조사한 중요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보험회사의 파산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상기 <표 II-1>과 같이 준비금 부족(낮은 가격)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8%,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41%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관계회사 부실(16%), 과도한 성장(12%) 및 자산운용 실패(11%)가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사업의 중단(9%), 관계회사 부실(8%) 및 과도한 성장(7%)이 중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시장에서의 보험회사 파산 원인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London Working Group(2003)이다. 이 연구는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EU에서 발생한 115개의 파산한 보험회사와 파산에 근접한 155개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영일반(management) 및 지배구조(governance)상의 회사 내부의 문제가 파산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는 무능력, 비전문 분야에 대한 운영, 통합성 부족이나 전략적 목표 간의 충돌, 부적절한 그룹의사결정에 대해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EU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파산에 대한 조기경보 지표로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현재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조기경보지표라기 보다는 개입을 위한 궁극적인 기준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London Working Group(2003)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향후 퇴출 정책과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7개의 생명보험회사와 2개의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으로는 무리한 외형성장 전략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 경쟁심화 및 보험수요 축소에 따른 보험회사업 환경 악화가 주요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파산 연구

일본과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을 비교 연구한 이순재와 김재현

(2003)은 로짓모형과 다변량판별분석으로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원인을 파악 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01년의 자료에 27개 재무변수를 적용해 부실 생명보험회사와 건전 생명보험회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효력상실 해약율과 부채구성 안정성이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원인으로 가장 유의성이 큰 변수로 보고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로짓모형은 보험금지급률이, 다변량판별분석에는 보험금지급률과 자산규모가 파산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용한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본의 형태와 분석모형에 따라 파산설명 변수의 종류와 방향성에 일관성이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첫째, 이는 통계적 가정을 만족할 만한 충분한 관측치의 확보가 어렵고, 둘째, 시장규율에 의해서 파산이 결정되기 보다는 감독당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데이터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경영행태가 이질적인 외국보험회사가 정상보험회사의 절반을 차지하여 정상보험회사 재무지표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2003)도 국내 보험회사 부실의 원인을 조사한 중요한 연구다. 이 연구는 부실 전 5년간 자료(1995년부터 1999년)를 이용하여 부실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이익창출능력(ROA)과 자본조달능력(자본금/수정총자산)에서 부실 생명보험회사는 정상회사에 비해 각각 7.0%p와 7.4%p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했다. 나아가 부실생명보험회사중 소형사는 보험영업 부문의 부실기여도가 높고, 대형사는 자산운용 부문의 부실기여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III.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 분석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퇴출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몇 년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퇴출한 회사의 대부분은 1987년 국내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진입한 신설 생명보험회사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1980년대말 생명보험 산업의 시장개방 현황 및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프로필을 요약하고, 시장개방 시점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회사 퇴출 규제의 변화를 분석한 후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한다.

1.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과 개방

가. 경제발전과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

자립경제의 싹을 잘라버린 35년의 일제 강점기와 한반도를 초토화시켜 버린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암흑기로 접어들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에서 보듯이 국내 1인당 GNP는 1963년 100달러에서, 1973년 396달러, 1983년 2,014달러, 1993년 7,811달러, 1996년에는 11,380달러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1인당 GNI는 7,355달러로 급락하였고 1999년에도 1인당 GNI는 1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침체기가 있기는 했지만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4년말 현재 1인당 GNI는 14,16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거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보험시장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금융기관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서민의 저축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표 III-1> 국민총생산과 1인당 GNP(GNI)추이[1)]

연 도	국민총생산 (억달러)	1인당GNP (달러)	연 도	국민총생산 (억달러)	1인당GNP (달러)
‘63	27	100	‘89	2,086	3,767
‘65	30	105	‘91	2,949	6,810
‘67	43	142	‘93	3,452	7,811
‘69	66	210	‘95	4,881	10,823
‘71	95	289	‘96	5,183	11,380
‘73	137	396	’97	4,740	10,307
‘75	209	594	’98	3,461	7,355
‘77	368	1,011	’99	4,452	9,438
‘79	616	1,647	’00	5,118	10,841
‘81	671	1,741	’01	4,820	10,160
‘83	800	2,014	’02	5,469	11,499
‘85	877	2,146	’03	6,080	12,720
‘87	1,338	2,873	’04	6,081	14,162

주 :1) 98년부터 GNP 대신 GDP 사용함, 1인당 GNP 대신 1인당 GNI 사용함.
자료 : 통계청 통계자료실 국민계정지표

<표 III-2>는 국민 1인당 및 가구당 생명보험 보유계약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62년에는 국민 1인당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이 1,200원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843만8천원에 도달하여 무려 7,032배가 증가하였다. 가구당 보유계약액도 1962년 6,900원에서 1990년에는 31,304천원으로 4,537배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은 구미 보험회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는 1980년대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함께 보험시장 개방 압력으로 구체화되었다.

<표 III-2> 1인당 및 가구당 생명보험 보유계약 추이[1)]

(단위 : 천원)

구분	1인당 보유계약액	가구당 보유계약액
‘62	1.2	6.9
‘70	8.4	45.2
‘75	32.5	166.5
‘80	304.1	1,426
‘85	1,951	7,982
‘90	8,437	31,304
‘96	11,109	44,437
‘97	12,325	49,230
‘98	13,186	52.743
‘99	15,157	60,630
‘00	17,632	70,527
‘02	23,770	95,080
‘04	27,093	108,372

주 : 1) 85년도 자료부터는 1인당 보유계약액*4=가구당 보유계약액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나. 생명보험시장의 대외 개방

1980년대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한미간의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국내시장,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다고 평가되었던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는 1983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1984년 제3, 4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측은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한국보험시장 진출 허용을 재차 요구하면서 생명보험시장 개방, 화재보험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풀 제도 폐지 및 외국보험회사들의 즉시 참여 등을 요구하였다.

그 후 보험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미국의 라이나생명(LINA: Life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과 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 컴퍼니(ALICO: 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는 1986년 11월에 지점설치를 신청하였고 1987년 4월22일 LINA, 1987년5월18일 ALICO에게 지점설치를 허가하였다.(생보협회, 2000) 이 두 외국사가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에 지점형태로 진출한 이후 <표 III-3>과 같이 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합작,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추가로 진출하였고, 캐나다, 네덜란드 및 프랑스계 생명보험회사가 합작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였다.

<표 III-3> 외국생명보험회사 국내 진입 현황

회사명	설립일	납입 자본금	본사국적	진출형태	비고
라이나	87.4.22	-	미국	지점	
알리코	87.5.18	-	미국	지점	97.아메리카생명에 계약이전
아플락	88.7.12	-	미국	지점	91.대한교육보험에 계약이전
조지아	88.9.1	-	미국	지점	91.네덜란드생명에 계약이전
한국푸르덴셜	89.6.16	100억원	미국	현지법인	97.푸르덴셜생명으로 상호변경
네덜란드	91.9.9	200억원	네덜란드	현지법인	91.조지아생명 계약인수 99.ING생명으로 상호변경
AGF	91.11.25	100억원	프랑스	현지법인	92.프랑스생명으로 상호변경
아메리카	97.3.25	-	미국	지점	97.알리코생명 계약인수

자료 : 생명보험 50년사(2003)를 중심으로 정리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진출은 현지법인 및 지점 외에도 국내 자본과 합작으로도 이루어 졌는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원칙은 외국생명보험회사 지점 허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주의 자본력과 생명보험회사 업 경험이 허가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내국인 주주의 허가 기준은 경제집중력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상위 15위내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을 제외하였고 16-30위는 합작사의 소유지분 50% 미만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합작사의 납입자본금은 본사가 지방인 경우 50억원이며 서울인 경우에는 60억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4> 합작사 설립 현황과 소유지분 구조

회사명	설립일	납입 자본금	외국사 지분	외국사	내국사
동부애트나	89.4.14	100억원	51%	Atena International(미)	동부그룹
동양베네피트	89.4.20	60억원	49%	Mutual Benefit Life(미)	동양그룹
코오롱메트	89.6.1	70억원	60%	Metropolitan Life(미)	코오롱그룹
고려씨엠	89.6.27	60억원	50%	Connecticut Mutual Life(미)	고려통상 (고려증권)
삼신올스테이트	89.8.9	100억원	50%	Allstate International(미)	삼환기업
영풍메뉴라이프	90.6.18	100억원	50%	Manulife (캐나다)	영풍그룹
고합뉴욕	92.2.25	65억원	51%	New York Life(미)	고려합섬

자료 : 생명보험 50년사(2003)를 중심으로 정리

다. 생명보험시장의 대내 개방

정부는 수십년동안 국내 생보시장을 외국에 개방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1986년까지 내국인에게도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84년 6월21일 대구 상공회의소의 생명보험회사 설립건의에 대한 회신 및 1985년 정기국회에서의 국내생명보험회사 신설허용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서도 여건 미성숙으로 허용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생명보험협회, 2000) 그러나 1985년 이후 보험시장 개방관련 정책기조는 선대내·후대외 개방으로 급선회하여 1988년부터 22개의 내국사를 허가하였는데 이는 순수 외국 생명보험회사(지점포함) 5개를 합치면 27개의 새로운 생명보험회사가 6개의 기존 생명보험회사가 과점적으로 점유하던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생보시장 참여자의 이러한 급격한 확대는 정부의 생명보험회사 시장 개방이 장기적인 계획이나 산업전략

측면에서 마련되었다가 보다는 미국 등의 외부 압력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생보시장을 개방하면서 국가 경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신설 생명보험회사를 선별했다. 정부의 신설 생명보험회사 허가 기준은 당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정책적 목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신설 생명보험회사 허가 기준(전국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6년 5월30일 전국규모 순수내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설 허가기준이 발표되면서 전국사 주주자격 결격자도 규정되었는데 15대 재벌의 계열주는 참여할 수 없고 16-30대 재벌은 50% 미만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6] 전국규모 순수내국 생명보험회사(이하 전국사)의 허가 원칙은 대규모 기업집단 배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외에,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겠다는 것, 참여하는 전국사가 자본력과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참여 자본이 금융업에 전업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기업 자본 보다 개인 자본을 선호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표 III-5>와 같이 세부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제시하였다.(생명보험협회, 1992)

---

6) 주주 자격 결격자는 다음과 같았음. 1)15대 재벌의 계열주(16~30대 재벌은 50% 미만 출자 허용), 2)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3)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4) 최근 3년동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자, 5) 위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자(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서 규정)에 있는 자.

<표 III-5> 신설 전국사의 허가 평가 항목 및 가중치

항 목	가 중 치
금 융 전 업	20%
개 인 출 자	16%
지 방 본 사	16%
출 자 능 력	16%
경 영 능 력	16%
출자의 건전성	16%
합 계	100%

그러면 신설 전국사의 6개 평가항목에 대한 각각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금융전업 항목

(가) 평가기준

허가를 신청한 생명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그 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열법인을 포함함. 이하 “대주주”라 함)가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는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만을 경영하는 경우는 상등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는 중등급 그리고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하등급을 주도록 하여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를 우대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금융전업 항목은 가중치가 20%로 6개의 항목 중 가장 높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다섯 번 째 평가항목인 ‘금융업 경영능력’ 가중치 16%를 같이 고려하면 당시 정책당국은 금융업 관련 자본이 생명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선진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에 경험이 있는 자본이 내국 생명보험회사를 신설하여 경쟁력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과 함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가급적이면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였는데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최근 금융겸업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개인출자 항목

(가) 평가기준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개인출자 항목은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과 부실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의 여유자금을 생명보험회사 신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목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불투명한 회계 및 금융 관행 하에서 타인 명의를 통한 우회출자 등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 목표의 달성은 애초부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이 현금흐름(Cashflow)영업을 추구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자가 필요해지면서 개인출자 항목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3)지방본사 항목

(가) 평가기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금융자산의 지역간 균형배분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회사의 본사가 서울인지, 지방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목표였지만 단순히 본사를 지방에 두어야 한다는 조항만으로'수도권 경제력 분산'이라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본다. 신설된 내국사 중 지방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는 전국사인 한덕과 지방 생명보험회사 9개가 있었지만 2005년말 현재까지 원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생존해 있는 회사는 없다. 부산생명(현재 럭키생명)과 광주생명(금호생명), 대전생명(SK생명)은 자금력이 풍부한 그룹사가 인수하면서 생존했지만 지방에 본사를 둔 나머지 7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여되었다.

(4) 출자능력 항목

(가) 평가기준

출자주주의 자본조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출자주주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재산세(과거의 부의 축적정도) 및 소득세(현재의 소득수준) 납세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허가신청 회사간의 출자능력 비교는 51%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주주(주주 1인이 51%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1%를 출자한 상위지분의 주주집단)의 최근 1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납세실적을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법규상 규정된 타법인에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 하려는 "한양생명"과 지방생명보험회사로 허가 할 계획인 "충북생명"을 제외한 15개사를 기준으로 함). 이 결과에 따라 1~5위는 상등급, 6~10위는 중등급 그리고 11~15위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출자능력은 진입 생명보험회사에게 중요한 기준중 하나다. 특히 생

명보험회사업의 이익 환수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생보시장 진입 이후 통상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항목은 진입 평가 항목의 핵심이다.[7] 특히 80년대 당시에는 언더라이팅을 통한 수익 시현보다는 Cashflow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영업이 확장될수록 출자능력은 더욱 필요하였다. 따라서 가중치를 16%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분석이다.

(5) 경영능력 항목

(가) 평가기준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 증권, 보험, 단자, 종금등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대주주(1인인 경우 당해인, 다수인 경우 과반수이상)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상등급을, 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1인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중등급을 그리고 대주주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신설 생명보험회사 허가 시 대주주의 금융업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이다. 이 항목의 가중치는 16%로 평가기준의 첫째 항목인 '금융전업'항목과 합칠 경우 총 36%로 타 항목의 2배가 넘는다. 이는 당시 정책당국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면서 금융산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겸업화가 가속화되는 금융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국내 현실을 적절히 고려한 항목이었다고 분석된다.

---

7) 그러나 영위하는 종목과 자산운용 등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RBC와 같은 자기자본 규제를 한다면 신설사 진입시 출자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급여력 등과 같은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출자능력은 핵심적인 기준이 될수 밖에 없다.

(6) 출자 건전성 항목

(가) 평가기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경영 내용이 동종업계 내에서 우수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모두 동업종평균이상이고 배당을 한 경우는 상등급, 상기 3지표 중 2개가 충족되는 경우는 중등급 그리고 상기 3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비금융기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주력기업(매출액기준)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내에서 양호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경우는 상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 이하인 경우는 중등급 그리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보험회사 설립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 설립 후 건전하게 경영을 영위하는지 여부 및 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당해 보험회사에 출자할 대주주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종 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시장기반과 건실한 경영내용 및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로 평가하였다.

정부는 상기 다섯 개의 항목별 점수 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자를 3등급(상, 중, 하)로 구분하고, 점수배정은 3:2:1로 하였다. 다만, 3등급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지방본사와 개인출자의 경우는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고 점수는 3:2로 배정하였다. 단계적인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의 전국사(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생명)의 설립이 허가되었다.[8)]

---

8)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는 <부록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표 III-6> 전국사 설립현황

구분	설립일	납입 자본금 (억원)	설립시 주주수	대주주	소재지
대신생명	89.6.20	100	9	대신증권	서울
태평양생명	89. 8.4	100	85	태평양화학	서울
국민생명	89.8.22	100	76	동아투자금융	서울
한덕생명	89.8.31	100	8	국제화재, 대한전선	부산
한국생명	89.11.9	100	9	대한화재	서울
신한생명	90. 1.4	100	56	신한은행	서울

자료 : 생명보험협회(2000)을 중심으로 정리

라.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설립

지방 생명보험회사는 지방 경제의 발전과 경제의 집중력 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30대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하였으며 본사는 수도권이 아닌 직할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발기인 대표는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정했으며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재산운용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을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허가 기준에 따라 9개의 지방 생명보험회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부, 경남, 전북, 충북)가 설립되었다.

<표 III-7> 지방사 설립현황

구분	설립일	납입자본금 (억원)	설립시 주주 수	주요 주주	소재지
부산생명	88.2.22	60	1,344	자유건설,부산은행	부산
대구생명	88.3.8	60	102	금복주, 대구은행	대구
광주생명	88.4.1	60	49	광주은행	광주
대전생명	88.3.7	60	34	태평양화학,충청은행	대전
중부생명	90.1.8	60	113	개인 주주	인천
경남생명	90.1.31	100	563	개인 주주	마산
전북생명	90.2.20	100	344	백양, 전북은행	전주
충북생명	90.8.14	100	793	개인 주주	청주
한일생명	93.8.7	100	-	개인 주주	춘천

자료 : 생명보험협회(2000)을 중심으로 정리

2. 퇴출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의 변화

퇴출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는 크게 합병과 인수(M&A), 자발적 퇴출(voluntary exit) 및 감독당국에 의한 비자발적 퇴출(involuntary)과 관련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생보시장 비자발적 퇴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규제를 중심으로 보험시장 개방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가. 1986년-1989년: 시장 퇴출에 대한 선언적 명령권

1980년대 중반이후 시장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진입 규제의 적절한 개정 및 진입 생명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선별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시켰다. 당시 보험시장 퇴출에 대한 규제로는 정부의 포괄적인 명령권이 보험업법 제6조 및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급여력과 같은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적으로 유럽에서는 1979년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은

1982년 지급여력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 보험감독청장협의회인 NAIC에서 IRIS라는 비율분석을 통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별해서 각 주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보하는 방법과 함께 각 주보험감독청에서는 각종 재무비율 지표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했었다. 미국 NAIC가 RBC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0년 이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은행은 물론 정부도'금융기관의 부실에 의한 공적자금 투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인식만 있는 상태여서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퇴출이나 지급여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사실상 부재하였다. 다만, 보험업법 등에 선언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보험업법 제6조 제3항은'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자산상태, 시장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증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15조는 재무부장관의 명령권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법적 명령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발동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업자에 대한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가 적었으며 또한 감독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여 남용의 여지가 있었다.

나. 1990년 3월: 담보력 확보기준 제시

신설사 진입 후 외형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사업비 지출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 취약하게 되면서 정부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의 일부로 1991년 4월 1일 담보력 확보기준을 제정하였다.

동 기준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말 K율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확정배당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 없는 회사는 총자산(이연자산포함)이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보다'91사업연도에는 30억원을 초과,'92사업연도에는 50억원을 초과, '93사업연도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차배당과 사차배당을 정해진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한 제재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설사의 경영진들도 안정적인 회사 경영보다는 외형성장에 중점을 둔 보험영업 경쟁에 치중하여 신설사의 지급여력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다. 1994년: 지급여력제도(지급능력에 대한 규정)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는 1994년6월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서 구체화되었다.[9] 정부는 보험업법 제6조, 제15조 및 제98조에 의거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충실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상태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은 지급여력기준이 매사업연도말 100억원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감독원장은 지급여력이 기준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증자권고를 받은 회사가 이행기간 내에 증자 등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9)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란 현재의 부채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의미하는 지급능력(Solvency)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의미한다. 즉, 지급여력은 책임준비금 등의 부채를 초과한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지급능력을 일컫는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가격의 부적정성, 거대재해의 발생, 자산운용수익의 하락 등의 이유로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간의 괴리에 대비한 충격 완화 장치, 즉 지급여력이 필요하다.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여력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여 적립한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보험업 제97조 준비금, 대손충당금, 사업비절감액으로 하며, 사업비절감액은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의 이연처리된 사업비와 재산관리비의 합계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감소액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지급여력이 기준보다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증자 등의 권고(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증자권고를 받은 회사가 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증자명령을 할 수 있으며, 증자명령의 이행기간은 회사가 그 명령을 받은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까지 하도록 하였다. 한편, 증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내용은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III-8> 지급여력 부족 규모에 따른 제재조치(1994. 6)

지급여력 부족규모	제재방법
1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 제한
100억원 이상 ~ 600억원 이하	○ 계약자배당 제한 ○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경고, 보험회사업의 일부제한(규모제한)
600억원 초과	○ 계약자배당 제한 ○ 보험회사업의 일부정지(종목제한) ○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이러한 규정을 기준으로 정부는 FY93 결산 결과를 기초로 1994년 재정적으로 부실한 보험회사에게 증자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들은 이로부터 4~6년 후에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되게 된다.

<표 III-9> FY93년 지급여력 기준 미달사 현황

회사명	증자권고액 (억원)	증자액 (억원)	정부 조치	98년이후 퇴출 여부
동 아	258	100	증자명령	00년 피합병 - 금호생명
아 주	100		증자명령	96년 대주주변경 - 금호
중 앙	277		증자명령	97년 피인수 - SK그룹
한 신	36	62	-	98년 계약이전 - 교보
태 양	18	50	-	98년 계약이전 - 흥국
한 일	10		-	04년 피인수 - 국민은행
국 민	324		증자명령	00년 피합병 - SK생명
대 신	343		증자명령	03년 피인수 - 녹십자그룹
태평양	303	50	증자명령	00년 피합병 - 동양생명
한 국	345		증자명령	01년 계약이전 - 대한생명
한 덕	335		증자명령	00년 계약이전 - SK생명
동 부	20	202	-	생 존
코오롱메트	144	200	-	생 존
계(13개사)	2,513	664		

자료 : 생명보험협회(2000)를 중심으로 재정리

흥미로운 사실은 지급여력이 미달한 13개 회사중 현재까지 생존한 회사는 당시 정부에서 권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자한 동부생명과 코오롱메트(현재, 메트라이프)뿐 이었다.

라. 1996년: 지급여력 규정 개정

다수의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96년 2월 기존의 지급여력 제도를 사실상 완화하여

개정했는데 이 개정의 주된 내용은 최저 지급여력기준의 정률화, 지급여력항목의 변경 및 추가, 그리고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단계의 세분화이다. 즉 최저 지급여력기준은 기존의 100억원에서 책임준비금의 1%로 변경되었으며, 지급여력 인정항목은 기존의 사업비 절감액을 초과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절감액으로 변경하였으며, 금리연동형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감소액을 지급여력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단계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였다.

<표 III-10> 지급여력제도의 보완 (1996. 2)

1996년 제도 변경 전	1996년 제도 변경 후
○ 최저 지급여력기준 : 100억원	○ 최저 지급여력기준 : 책임준비금의 1%
○ 지급여력인정항목 ・사업비 절감액 (신 설)	○ 지급여력인정항목 ・초과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절감액 ・금리연동형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감소액
○ 제재단계 : 3단계	○ 제재단계 : 5단계로 확대

개정된 제도에 의하면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증자명령 불이행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 지급여력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1996. 2)

지급여력 부족규모	제재방법
100억원 미만	○ 대표이사 경고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기관경고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 제한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하	○ 보험회사업 규모제한
1,000억원 초과	○ 보험회사업 종목제한 ○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한편, 정부는 지난 '95년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자배당 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새로운 지급능력규정에 의거하여 증자를 이행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마. 1998년 6월: 적기시정조치 기준 도입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말 이후 지급능력(여력)제도는 보험감독규정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개정에 따라 부실 보험회사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는데 보험감독규정도 재무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지급여력 규제방식을 종전의 금액기준(지급여력 부족액 기준)에서 비율기준(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은 1998년 6월 '보험감독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지급여력에 대한 기준이 매 사업년도말에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항목의 합/해약식 준비금)이 0%를 초과하도록 변경되었다. 지급여력에 포함되는 항

목으로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법 제97조 준비금 및 후순위차입금이었다. 지급여력 부족비율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부족비율이 0-1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10% 이상 - 2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20% 이상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1999년 5월: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도입

종전의 0% 이상의 지급여력 확보기준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100%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강화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시 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지급여력 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생명보험회사에는 '경영개선권고', 0%이상 50%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추가지급능력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을 골격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2000년 8월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급여력제도 적용 대상 회사를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외국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납입방법을 신설하고, 국내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지점에 대해서도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국내 재산 보유에 관한 규정을 보험업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사. 현행 퇴출 제도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1999년 도입된 EU방식의 비율규제를 골격으로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현행 퇴출 제도의 기본 틀인 지급여력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보험회사의 퇴출에 대하여 보험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3조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1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에서는 보험업법 제123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째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둘째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셋째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보험업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4, 15, 16조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현재의 경영실태평가제도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영평가제도를 리스크 중심의 CAMEL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기존의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에서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항목별 비중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 30점, 자산건전성 20점, 경영관리 15점, 수익성 20점, 유동성 15점이다. 여기서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과 유동성은 계량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영관리 부문은 비계량적으로 평가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한 단계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7-17조

에서는 경영개선권고를, 제7-18조에서는 경영개선요구를 그리고 제7-19조에서는 경영개선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10)]

<표 III-12> 재무건전성(지급여력) 규제의 주요 변화

구분	관련 규정	세부 내용
90년 이전	보험업법 제6조와 제15조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없음.
90.3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준칙>의 일부로 제정	매사업년도말 일정금액 이상의 담보력을 확보해야 계약자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94.6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	최초로 지급여력제도 도입 및 인정항목 신설 매사업년도말 100억원 이상의 지급여력 확보 의무화 미달금액에 따른 3단계 제재조치
96.2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 - 지급여력 기준 완화	매사업년도말에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1%이상”의 지급여력 확보 의무화
98.6	보험감독규정으로 통합 적기시정조치 기준 도입	제25조(지급여력 확보기준)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를 초과 하도록 의무화 부족 비율: 0-1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부족 비율: 10-2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부족 비율: 20% 이상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99.5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도입	종전의 0%이상의 지급여력 확보기준을 지급 여력기준(100%)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강화 부족 비율: 50%-10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부족 비율:0%-5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부족 비율: 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00.8	지급여력 적용 대상회사 확대	외국 생명보험회사 국내지점도 지급여력비율 적용
현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및 명령권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 명기 경영실태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적기시정조치규정 경영실태평가 평가 항목과 가중치 규정

10)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부실징후 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강동수, 2004)

<표 III-12>는 1980년말 이후 지급여력을 중심으로 한 재무건전성 규제의 변천 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현행 보험회사 자기자본(지급여력) 규제가 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리스크기준자본금(RBC) 형태로 개선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11] RBC 제도에는 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같은 기술적 이슈와 자기자본 규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감독적인 이슈가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불능 확률을 제로로 만들 정도로 요구 자기자본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만 적어도 이 지불불능 확률이 국제적 정합성을 가질 정도(예: 1%미만)로 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IAA, 2004)[12]

3. 퇴출 생명보험회사 분석

이하에서는 1997년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에서 퇴출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이를 분석하고, 퇴출 신설사와 생존 신설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퇴출 생명보험회사의 소유구조 등 특성을 살펴본다.

가. 퇴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이 분석

1997년 이후 비자발적 퇴출을 결정하는 핵심적 지표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었으며 현재도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

11)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금융감독원(2004(a), 2004(b) 및 IAA(2004) 등을 참고할 것.

12) FSA(2005)는 stress test에 의해서 계산되는 보험회사의 ECR(Enchanced Capital Requirement) 수준은 한해동안 재무건전성(Solvency)이 신뢰도 99.5% 로 확보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보험회사의 요구자기자본(Required Capital)에 대한 이론 및 현실적인 자세한 논의는 (IAA,2004)를 참고할 것.

전성을 함축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1994년 지급여력제도 도입 당시 지급여력 기준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매사업연도말 현재 100억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지급여력 인정항목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해약식 이상 보험료적립금, 법제97조 준비금, 계약자 미할당 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및 사업비절감액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13>은 FY93년부터 FY97년까지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이를 보여주는데 그 중 FY93과 FY94의 지급여력은 1994년 6월 도입된 규정에 의거해서 계산되었다. 1996년 2월 지급여력제도가 개정되면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억원 이상이었던 기존의 지급여력 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로 정률화 하였다. 이 조치로 영업규모가 크지만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던 동아생명은 엄청난 증자 부담을 안게 된다.[13] 지급여력 인정항목에 금리연동상품 감소율을 추가한 것은 내실 경영을 유도하려고 한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당시 지급여력 인정항목으로는 자본금, 잉여금, 해약식준비금 이상 보험료적립금 등이 있었으나 신설사의 경우 이러한 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서 신설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할 항목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초과사업비 감소분을 인정해줌으로써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연동형상품 판매비중 감소율을 인정함으로써 당시 신설사의 금리연동형상품(노후복지, 새가정복지, 종업원퇴직보험)의 비중이 과다하여 금리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하였다.

1996년 개정안은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종전 규정에는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제재조치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종전 규정에는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업의 일부정지(종목제한) 및 회사 합병(또는 정리권고)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1996년 개정안에서는 부족 규모가 500억원

13) 동아생명의 지급여력 부족액은 FY94년 173억원에서 FY95년 3,747억원으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다.

이상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업 규모 제한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였고, 부족분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업의 종목제한과 회사 합병(또는 정리권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 조치를 완화하였던 것은 1995년 당시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종전의 지급여력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FY95년 말에는 다수 신설사의 지급여력 부족액이 600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신설사에게 그 정도의 증자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증자가 불가능한 경우 다수의 신설사가 M&A 또는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집단적 퇴출이 몰고 올 정책적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Y95년 총 지급여력 부족액은 12,039억원으로 FY94년의 2,443억원에 비해 무려 6배 가량 증가했지만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당시 합병 또는 정리권고를 받은 보험회사는 없었다. 다만 지급여력이 부족한 17개 회사에 대해서는 증자명령이 내려졌다.[14)]

---

14) FY93 결과 증자명령 = 동아, 아주, 중앙, 국민, 대신, 태평양, 한덕, 한국,
FY94 결과 증자명령 =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동양, 아주, 중앙
증자권고 = 신한, 조선, 한신
FY95 결과 지급여력이 부족한 17개 생명보험회사에게 증자명령을 내림.
FY96 결과 지급여력이 부족한 18개 생명보험회사에게 증자명령을 내림(97년 8월)
FY97 결과 정부는 지급여력이 부족한 15개사와 잠정적으로 지급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회사(신한, 대신, 한일) 3개사에게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을 요구함(98년 6월)

<표 III-1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 부족액 추이

(단위: 억원)

회사 \ 연도	FY93[1]	FY94[1]	FY95[2]	FY96[2]	FY97[2]
동 아	258	173	3,747	3,178	3,858
대 신	343	546	910	954	(51)[3]
태평양	303	129	551	877	433
국 민	324	257	620	1,076	463
한 덕	335	362	757	751	426
한 국	345	443	972	1,386	462
신 한	-	(29)[3]	400	551	(239)[3]
동부애트나	20				
동양베네피트	-	123	939	220	767
코오롱메트	144		9	920	
고 려CM			267	591	911
삼신올스테이트					
부산(한성)	-		111	253	345
대구(조선)	-	(17)[3]		274	389
광주(아주,금호)	100	93	388	431	248
대전(중앙,SK)	277	317	583	376	577
경남(대일, 두원)			235	287	470
중부(국제)			496	869	2,939
전북(한신,BYC)	36	(99)[3]	589	653	973
충북(태양)	18		465	758	958
한 일	10				(15)[3]
지급여력부족액 합 계	2,513	2,443	12,039	14,405	14,219

주 : 1) FY93과 FY94는 94년에 제정된'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결과임.

2) FY95, FY96, FY97은 96년 2월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3) ( )은 지급여력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지만 향후 이 회사들은 지급여력 부족이 우려되어 정부로부터 제재받은 회사. FY94는 증자권고, FY97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징구대상이 됨.

자료 : 보험통계연감 및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활용 또는 근거로 계산.

나. 퇴출 신설사와 생존 신설사의 재무 건전성 비교

생명보험 사업은 인수이익(underwriting profit)측면에서 예상손실과 실제손실이 일치하는 대수의 법칙을 달성하고 비용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업 규모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신설사가 단기간에 최소효율 규모나 대수의 법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극대화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영전략은 신설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신계약비와 같은 보험영업 비용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즉시 집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신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계속 적립해야 것이 더 무거운 부담이었다.

<표 III-14> 기존사의 준비금 대비 실재자산 비율(%)

구 분	생보시장 진입연도	1988년	1992년	1996년
대한[1)]	1946	100.99	101.94	102.64
제일	1950	102.09	102.78	103.41
삼성(동방)	1957	104.24	103.83	103.12
흥국	1950	101.83	101.62	102.92
교보(태양)	1958	106.73	105.41	105.58
동아[2)]	1973	95.88	99.44	92.73

주 : 1) 대한생명은 1999년 금감원의 실사 및 특별검사 결과, 1998년 12월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약 2.9조원으로 나타나 표의 비율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2) 동아생명은 1999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퇴출함.

1962년 보험업법 제정시부터 보험회사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년도의 사업비는 회사 설립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매년 그 일부를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규정은 보험회사업 초기의 과도한 사업비가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453조가 정하

는 5년이내 균등액 이상의 상각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설립비용과 사업비 상각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노상봉과 홍범식, 1995). 이 규정은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장점은 있으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1988년 당시 기존 생명보험회사들은 동아생명을 제외하면 이론적인 최소효율 규모를 달성하거나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 -14>는 기존 생명보험회사의 해약식 책임준비금 대비 실재자산 비율을 보여주는데 재무 부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동아생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100%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아래에서 논의할 퇴출 신설사는 영업 8년차의 경우 이 비율이 80%를 넘지 못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II장에서 논의했듯이 1990년 이후 부실 생명보험회사와 정상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교는 이순재와 김재현(2003)과 금감원(2003)에서 연구된 바 있다. 이순재와 김재현(2003)은 효력상실 해약율과 부채구성 안정성을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원인으로 가장 유의성이 큰 변수로 보고했다. 금융감독원(2003)은 부실 생명보험회사가 이익창출능력(ROA)과 자본조달능력(자본금/수정총자산)에서 정상회사에 비해 각각 7.0%p와 7.4%p 저조한 것으로 보고했다. 나아가 부실 생명보험회사중 소형사는 보험영업 부문의 부실기여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횡단면 접근방법과는 달리 1980년대말 시장에 진입한 생명보험회사중 부실 때문에 퇴출한 생명보험회사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추이를 비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시점부터 이들의 퇴출시점인 9차년도 또는 10차년도 까지 두 집단의 추이를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해약식 책임준비금 대비 실재자산비율(이하 실재자산비율)을 사용한다.[15] 실재자산은 총자산에서 이연자산을 차감하는데, 이

15) 추이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지급여력은 우선순위였지만 지급여력(비율)에는 순

연자산은 사업비 등 이미 지출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일정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으로 청산 기준에서 보면 가공 자산이기 때문이다.

<표 III-15>는 1988년부터 1990년 까지 생명보험시장에 진입한 생명보험회사의 실재자산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 퇴출 신설사는 이 시기에 진입한 생명보험회사중 시장에서 퇴출한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이며, 생존 신설사는 신설 생명보험회사중 시장진입 9년까지 비록 대주주 변경 등은 있었더라고 공적자금 투여없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신설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이다. 부실 퇴출 생명보험회사에는 다음의 12개사(외국사 포함시 13개)가 포함되었다. 지방사로 대구(조선), 경남(두원), 중부(국제), 전북(BYC), 충북(태양)이 포함되었고, 전국사로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이 합작사로는 고려CM, 삼신올스테이트 그리고 외국사로는 ALICO(AFLAC과 조지아는 통계 기간이 짧아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존 생명보험회사로는 8개 회사(외국사 포함시 1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사로 부산(럭키), 광주(금호), 대전(SK), 전국사로 신한, 합작사로, 동부애트나, 동양베네피트, 코오롱메트, 영풍매뉴 그리고 외국사로는 LINA와 한국푸르덴셜이 포함되었다.

영업개시후 1-2년차는 생존 신설사가 퇴출 신설사보다 실재자산비율은 높지만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16] 3년차에서 생존 신설사(외국사 제외)의 실재자산비율 평균은 107.1%인 반면 퇴출 신설사의 실재자산비율(평균)은 97.8%로 실재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발생한다. 3년차에서 퇴출 신설사와 생존 신설사의 평균에 대한 T검증 결과 P-Value는 0.0302로 평균 값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년차 이후 생존 신설사와 퇴출

수한 'Solvency Margin'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정책적 유인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연구 기간 중 몇 번의 제도 개정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16) 외국사들은 영업 초기에 보장성상품을 주로 판매하였거나 매우 보수적인 영업으로 <표 III-19>에서 보듯이 사업 6차년도까지 극히 높은 실제 자산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사들과 전혀 다른 양상임.

신설사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P-Value 5%이하로 지속적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재무건전성 차이가 사업 초기부터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은 표본의 수가 매우 한정된 상황(생존 신설사 8개, 퇴출 신설사 12개)에서 나타난 것으로 표본의 수를 확장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17]

퇴출 신설사는 8년차에 평균 비율은 78.5%(외국사 제외)로 이들 중 상당수의 회사는 9년차에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반면 생존 신설사의 경우에는 8년차(1988년에 첫 결산을 시작한 회사의 경우 1995년이 된다)의 평균 비율은 94.2%(외국사 제외)로 5년차 평균과 차이가 없다.

<표 III-15> 퇴출사와 생존사의 실재자산 비율 비교(%)

구분	비교1 (외국사 제외)			비교2 (외국사 포함)		
	생존 신설사	퇴출 신설사	T검정결과 P-Value	생존 신설사	퇴출 신설사	T검정결과 P-Value
1년차	413.9	245.3	.2294	32,367	246.3	.1319
2년차	115.5	106.4	.1180	2,987	111.6	.1315
3년차	107.1	97.8	.0302	834.6	109.8	.1328
4년차	101.0	89.6	.0072	293.9	95.2	.1237
5년차	94.1	86.4	.0221	197.7	91.8	.1237
6년차	96.3	85.3	.0044	146.4	91.0	.1052
7년차	94.7	83.7	.0101	111.8	90.0	.1524
8년차	94.2	78.5	.0159	96.9	83.9	.0728
9년차	94.4	NA	NA	95.9	NA	NA

주 : 실재자산비율 = (총자산 - 이연자산)/해약식 책임준비금
자료 : 보험통계연감 (1988년 - 1998년)을 기준으로 계산

즉 생존 신설사는 회사설립 5년차 이후 증자 및 경영 내실화를 통해

17) 표본을 2년씩 묶어서(1-2년차, 3-4년차, 5-6년차, 7-8년차) 두 집단의 평균을 T검증 한 결과 1-2년차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P-Value 1% 이하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실재자산비율을 94% 이상으로 유지했지만, 퇴출 신설사의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실재자산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존 신설사의 비율을 <표 III-14>의 기존사 실재자산비율(101%~107%)과 비교해보면 생존 신설사의 실재자산비율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설립후 10년을 초과한 기존사는 총자산내 이연자산의 비중이 영(0)인 상태이지만 신설사는 이연자산이 총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I-16> 지방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지방사						생존 지방사			
	대구	경남	중부	전북	충북	평균	부산	광주	대전	평균
1년차	150.5	121.8	107.3	175.4	161.5	143.3	133.4	113.8	150.9	132.7
2년차	115.4	107.1	100.8	120.6	112.7	111.3	117.8	108.1	108.4	111.4
3년차	104.9	93.5	81.4	86.8	94.1	92.1	115.2	101.5	95.6	104.1
4년차	103.4	92.0	86.0	75.8	85.4	88.5	114.6	104.0	99.6	106.1
5년차	97.6	89.2	81.2	77.4	81.5	85.4	103.5	94.8	85.7	94.7
6년차	100.1	87.9	75.5	69.5	78.3	82.3	103.3	101.1	85.2	96.5
7년차	99.2	85.3	71.7	66.5	70.2	78.6	102.9	95.1	81.7	93.2
8년차	98.1	80.2	39.4	56.2	61.6	67.1	99.2	92.4	81.2	90.9
9년차	96.3	퇴출	퇴출	퇴출	퇴출		97.0	104.4	84.1	95.2
10년차	87.0						91.7	97.3	89.6	92.9

주 : 지방사중 1993년 설립된 한일생명은 통계기간(5년)이 짧아 제외했으나 퇴출한 지방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줌.

퇴출한 지방사와 생존한 지방사의 3년차 비율은 각각 92.1%와 104.1%로서 차이는 보이기 시작한다.(차이 12%p) 4년차의 경우 퇴출 지방사는 88.5%, 생존 지방사는 106.1%로 그 차이는 18%p로 급격하게 벌어진다. 퇴출 지방사의 경우 시장 진입이후 실재자산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퇴출 직전인 8년차에는 67.1%까지 추락한다. 퇴출 지방사 중 특히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부생명(국제), 전북생명(BYC) 및 충북생

명(태양)은 9년차인 1998년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고 대구생명(조선)은 2000년에 현대생명에 피합병 되면서 퇴출한다. 생존 지방사도 시장진입 이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0년차에는 92.9%를 기록한다. 즉 생존한 지방사도 기존사의 102-105%에 비하면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전국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전국사						생존 전국사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평균	신한
1년차	108.5	113.4	43.5	122.1	1576.4	392.8	908.3
2년차	97.6	98.2	102.6	99.0	103.5	100.2	115.9
3년차	99.5	100.4	102.4	101.1	101.5	101.0	119.1
4년차	91.0	92.4	83.8	90.3	86.8	88.9	99.9
5년차	87.5	89.2	82.8	86.7	84.0	86.0	95.2
6년차	84.6	89.4	85.0	85.5	84.4	85.8	94.1
7년차	84.7	89.7	89.5	84.4	86.7	87.0	92.6
8년차	85.0	88.6	88.8	85.6	87.2	87.0	93.6
9년차	87.4	87.0	87.7	87.1	85.7	87.0	92.9

전국사는 신한생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장에서 퇴출하였고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되었다. 퇴출한 전국사의 경우 결산 3년차에서는 실재자산비율이 101.0% 였으나 4년차에서는 급격하게 하락하여 88.9%로 나타났다. 5년차에는 퇴출된 모든 전국사의 실재자산비율은 80%대로 하락한다. 그후 실재자산비율은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90%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여 부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다가 이후 퇴출되게 된다.

신설 생명보험회사중 퇴출 합작사와 생존 합작사의 비율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생존한 합작사는 3년차 실재자산비율이 106.3%, 4년차에는 97.4%로 하락하여 그 후 93%~97% 범위를 유지한다. 반면 퇴출한 합작사중 삼신올스테이트는 8년차까지 합작사 중 높은 수준의 실재자산 비율을 유지했으나 9년차(FY97년)에는 67.7%로 수직 하강하게 된다.

<표 III-18> 합작사의 실제 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합작사			생존 합작사				
	고려 CM	삼신 Allstate	평균	동부	동양	코오롱 메트	영풍 매뉴	평균
1년차	143.3	125.5	134.4	115.5	109.8	115.1	1664	501.1
2년차	107.9	111.5	109.7	99.9	97.5	103.2	173.6	118.5
3년차	96.9	111.2	104.0	100.19	99.6	95.6	130.0	106.3
4년차	85.8	102.9	94.3	96.1	86.7	89.1	117.7	97.4
5년차	80.1	99.4	89.7	94.2	83.1	86.4	109.8	93.3
6년차	85.1	97.9	91.5	100.4	87.6	92.0	107.1	96.8
7년차	79.0	97.3	88.2	98.9	87.6	92.2	106.3	96.2
8년차	73.3	98.2	85.7	98.2	88.5	92.9	107.2	96.7
9년차	58.6	67.7	63.2	97.3	88.1	96.8	NA	94.1

그 후 삼신올스테이트는 실질적인 모기업인 대우그룹의 부도 및 외국계 합작 파트너였던 올스테이트 생명이 철수하게 되면서 2000년 6월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무려 -1,414%로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고려CM(고려생명)의 경우는 실재자산비율이 4년차부터 지속적으로 합작사 중 가장 낮아 진작부터 시장 퇴출 위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와 함께 모기업이 위태로워지면서 회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표 III-19> 외국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외국사			생존 외국사		
	AFLAC	Georgia	ALICO	ALICO	프루덴셜	평균
1년차	31,800	24,243	252.6	252.6	320,233	160,180
2년차	1,735	392	173.9	173.9	28,830	14,474
3년차	퇴출	퇴출	254.1	254.1	7,382	3,744.5
4년차			162.2	162.2	2,018	1,065
5년차			157.0	157.0	1,115	612.3
6년차			159.4	159.4	583	346.6
7년차			165.8	165.8	305.9	180.4
8년차			148.4	148.4	107.2	107.8
9년차			퇴출	-	-	

시장에서 퇴출한 외국사는 실재자산비율이 140%를 상위하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고 시장에서 생존한 외국사의 경우에도 시장 진입후 국내사에 비해 높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표 III-20> 생명보험회사 퇴출 현황과 공적자금 투여 여부

설립시 구분 (93년까지)	퇴출 현황(M&A, 계약이전)	퇴출시 공적자금 투여	퇴출시 공적자금 비투여및 대주주 변동	대주주 변동없이 생존
기존사(6개) 대한, 흥국, 제일, 삼성, 교보, 동아	동아: 00년 금호에게 피합병 대한: 99년 국영화 제일: 99년 알리안츠에 인수	대한, 동아	제일	흥국 삼성 교보
전국사(6개) 국민, 신한, 한덕, 대신, 한국, 태평양	국민과 한덕: 00년 SK에 피합병 한국: 01년 대한생명에 계약이전 대신: 03년 녹십자그룹에 인수 태평양: 00년 동양에 피합병	국민, 한덕, 한국, 대신, 태평양	-	신한
지방사(9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중부, 경남, 전북, 충북, 한일	대전(중앙): 97년 SK 인수 대구(조선): 00년 현대에 피합병 중부(국제): 98년 계약이전 경남(두원): 99년 계약 이전 전북(한신, BYC): 98년 계약이전 충북(태양): 98년 계약이전 한일: 04년 국민은행 인수	대구, 중부, 경남, 전북, 충북, 한일	부산(럭키) 광주(금호) 대전(SK)	없음
합작사(7개) 동부애트나, 동양베네피트, 코오롱메트, 삼신올스테이트, 고합뉴욕, 고려CM,영풍매뉴	고려(고려CM): 98년 계약이전 삼신(삼신올스테이트): 01년 계약이전	고려CM 삼신올스테 이트	영풍매뉴(PCA) 동부애트나 동양베네피트 코오롱메트 고합뉴욕	없음
외국사(7개) ALICO, Georgia, 네덜란드, AGF, AFLAC, 라이나, 푸르덴셜	ALICO: 97년 계약이전 Georgia: 92년 계약이전 AGF: 03년 대주주변경 AFLAC: 91년 계약이전	공적자금 투여 없음	ALICO Georgia AFLAC	ING(네덜 란드) 라이나 푸르덴셜 프랑스

다. 퇴출 생명보험회사의 질적 분석

(1)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소유 구조와 시장 퇴출

국내 생명보험회사중 공적자금 투여되면서 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출한 생명보험회사와 시장에서 생존한 생명보험회사와의 소유구조 차이를 나타내면 <표 III-21> 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회사의 모기업을 재무구조가 정상적인 기업과 부실한 기업으로 나누었고, 모기업이 정상적인 경우를 모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시 30대 대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었다.

<표 III-21> 모기업 특성과 신설사 생존 현황

모기업 재정상태	모기업 규모	생존 기업	퇴출 기업(공적자금 투여)
정상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임	아주(금호, 10) 동양베네피트(동양, 30) 동부애트나(동부, 27) 한성(LG, 4) 코오롱메트(코오롱, 19) 뉴욕고합(고합, 11) 중앙(SK, 6)	
	기 타	신한(신한은행) 영풍매뉴(영풍, 42)	국제(대한방적), 태양(임광토건) BYC(BYC), 한덕(대한전선, 36) 국민(개인), 태평양(태평양, 62) 대신(대신증권)
부실	규모가 혼재됨		한국(현대,1), 삼신(대우관련, 3) 한일(쌍용관련,7),조선(갑을, 23) 고려CM(고려증권)

주 :* 괄호내 순위는 '98.10.24 현재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 순위임

위의 <표 III-21>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림III-1>로 나타낼 수 있다. 신설사중 외국사(지분 100%를 외국기업이 소유)는 모두'생존' (normal)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생존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퇴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사 중에서 모기업이 부실했던 생명보험회사는 전부 공적자금이 투여되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출되었다. 모기업 부실화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예: Best, 2003, 2004 등) 비록 모기업의 재정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30대 대기업기업집단에 포함될 정도로 규모가 컸던 모기업에 속했던 생명보험회사는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기업에 소속했던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수가 비자발적으로(사후적으로 공적자금 투여) 퇴출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작은 그룹은 자회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자금 지원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30대 그룹사는 아니었지만 재정적으로 우량했던 신한생명은 생존했고,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유지한 영풍의 경우는 공적자금 투여없이 타 보험회사에 인수되었다. 위의 결과는 모회사의 재무 상태가 자회사인 생명보험회사 생존에 결정적 변수이며 나아가 모기업의 규모도 자회사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III-1> 신설 생명보험회사 특성과 생존 및 퇴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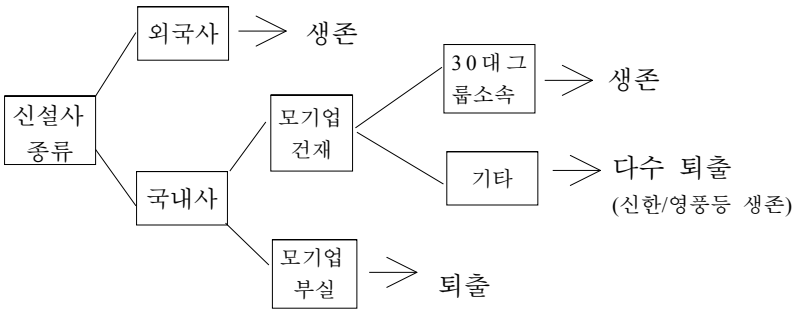

(2) 합작사의 지분구조와 시장 퇴출

합작 생명보험회사는 국내 주주가 51%의 지분을 소유한(국내사 주

도 합작사) 동양베네피트, 국내 주주와 해외 주주의 지분이 각각 50%(국내사와 외국사 동등 지분)인 동부AXA, 고려CM, 삼신올스테이트, 영풍메뉴라이프 및 해외 주주의 지분이 51%(외국사 주도 합작사)인 코오롱메트와 고합뉴욕 세 종류로 나타났다. 향후 증자 등 소유구조 변화에서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한 측이 자연스럽게 상대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동양베네피트는 순수 국내사인 동양생명으로, 코오롱메트와 고합뉴욕은 100% 해외 주주인 메트생명과 뉴욕생명으로 소유구조가 변했다. 양 파트너의 지분이 동일한 합작사의 경우 증자 등 소유구조 변화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증자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늦을 수 있는데 실제 일부 합작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증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양 파트너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합작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표 III-22> 합작사의 지분구조와 퇴출 여부

구 분		국내사 지분 (%)	해외사 지분 (%)	퇴출 여부	진행 과정
국내사 주도 합작사	동양 베네피트	51	49	생존	동양그룹에서 외국지분 인수
국내-외국사 동등 지분	동부애트나 (AXA)	50	50	생존	동부그룹에서 외국지분 인수
	고려CM	50	50	퇴출	90년 합작사는 영국CM으로 변경 95년 고려생명으로 사명 변경 모기업인 고려증권의 시장퇴출로 동반 퇴출
	삼신올스 테이트	50	50	퇴출	실질적 국내 모기업인 대우그룹의 부실과 올스테이트 철수로 퇴출
	영풍매뉴 라이프	50	50	생존	99년 영풍에서 지분 인수, 01년 영국 푸르덴셜이 인수하여 02년 PCA로 상호 변경
외국사 주도 합작사	코오롱메트	49	51	생존	메트라이프가 한국측 지분 인수
	고합뉴욕	49	51	생존	뉴욕생명이 한국측 지분 인수

(3) 대한생명의 부실화(공적자금 투여)

대한생명의 부실화(공적자금 투여)는 분식회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97년까지도 대한생명은 국내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중 하나로 지급여력 등 재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감독당국과 회계감사법인은 보고했었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1998년 6월부터 추진한 Met Life사와의 외자유치 협상 및 실사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자 1999년 2월 금융감독원이 자산부채실사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2월말 기준으로 순자산 부족액이 약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대한생명의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제입찰을 통하여 매각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대한생명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자본감소명령이 내려졌고 예금보험공사는 순자산 부족분 3.3조원의 60%인 2조 500억원을 1999년 10월-11월에 걸쳐 출자하였다. 이후 대한생명의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1조5천억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여되었다. 2002년 9월 23일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의 51%를 한화컨소시엄에게 8,236억원에 매각하였다. (김용우,2004)

<표 III-23> 대한생명의 부실 발생 원인과 손실 금액

부실 원인	손실금액 (억원)	비고
계열사 및 신규사업에 대한 부당 사업자금 지원 대출	22,665	대손예상액
은행주식 대량 매입·보유	2,917	경기, 서울, 제일,조흥은행
기부금 등 대가성없는 자금 사외유출	490	기독교 횃불재단 등
미술품 등 비운용자산 구입	201	896점
대우그룹 신용대출	1,660	추정손실
부당 해외투자	2,000	해외파생금융상품 등
최순영 전 회장의 회사자금 임의사용	2,737	횡령, 법인세납부 등
대기업 부실대출	1,096	기아자동차, 진도 등
합 계	33,766	

자료 : 김용우(2004)

라.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퇴출 분석 종합

1980년대말 보험시장을 개방하면서 정부는 시장이 개방된 후에도 생명보험 시장은 '경쟁적 시장'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이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신설사 허가 기준은 금융산업 내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미시적 적격성보다는 국가적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거시적 적격성에 비중을 더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설 생명보험회사가 무더기로 퇴출하면서 신설 보험회사 허가시 중요한 정책 목표였던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수도권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은 애초 목표의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수십 개의 신규 생명보험회사를 허가했다면, 사후적 규제인 퇴출 및 재무건전성 제도를 강화해서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및 risk-taking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및 감독은 미흡했다. 분석 결과 퇴출 신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생존 신설사와 비교하여 실재자산비율로 검증한 결과 사업 개시후 3년 시점부터 퇴출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t검증 결과 5% 이내로 유의). 이 결과는 퇴출된 신설사에 대해서 사업개시 후 3년 시점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유구조 분석에서 생명보험회사 퇴출에 모기업의 규모와 재정상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은행과는 달리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생명보험회사는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어, 모기업의 흥망에 따라 계열기업인 생명보험회사의 존폐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IV.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 분석

1. 미국 보험시장 퇴출 현황과 제도

보험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보험회사의 파산 및 퇴출은 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시장에서 퇴출한 보험회사의 수는 944개사로 연평균 발생건수 47.3건이며, 발생률은 0.94%이었다 <표 IV-1>. 연평균 퇴출 건수는 손해보험회사가 27.3건으로 생명보험회사의 20.0건 보다 7.3건 높지만, 퇴출 발생률은 생명보험회사가 0.99%로 손해보험회사의 0.91%를 0.085%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퇴출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간별로 보면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시장 퇴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표 IV-1> 미국 보험시장의 퇴출 빈도 (1981-2000년)

구 분	부실 발생 건수			기간별 연평균 발생률(%)		
	총건수	연평균	발생률(%)	'81-'88	'89-'92	'93-'00
생명보험	399	20.0	0.99	0.69	2.13	0.68
손해보험	545	27.3	0.91	0.84	1.64	0.61
합계	944	47.3	0.94	0.76	1.85	0.64

자료 : AM Best's (2002, 2003)

주의해야 할 것은 <표 IV-2>에서 보듯이'비자발적 퇴출'에 대한 정의는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와 신용평가기관인 A.M. Best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퇴출한 보험회사 수를 세는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A.M.Best사는 한 그룹내의 개별 회사를 개별적으로 카운트하는 반면 NAIC는 하나의 보험그룹을 하나로 카

운트한다. 예를 들면 Reliance Insurance Group 파산에 대해서 NAIC는 1개로 카운트했지만 A.M. Best는 11개로 센 것이다. 1996년 까지 NAIC에서는 한 주에서만 영업하는 소형 보험회사의 비자발적 청산은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 적어 카운트하지 않았다. 한편, 비자발적 청산에 대한 통계치는 있으나 아직 자발적 청산에 대한 정리된 통계치는 없다.

<표 IV-2> 미국시장에서 비자발적 퇴출 보험회사 연도별 현황

연도	NAIC(P/C)	AM Best(P/C)	NAIC(L/H)
1991	19	46	25
1992	29	56	12
1993	15	43	11
1994	11	31	8
1995	4	15	2
1996	6	11	4
1997	14(13)[1)]	34	4(1)
1998	4(5)	18	2(4)
1999	3(3)	7	7(4)
2000	9(9)	30	4(6)
2001	17(7)	30	0(3)
2002	12(9)	38	1(1)

주 : 1) 괄호안의 숫자는 단일 주에서 영업중 퇴출한 보험회사 수
자료 : AM Best's (2002, 2003) Life and P/C

미국 보험시장 퇴출은 연방정부가 아닌 개별 주에서 감독·관리한다. 즉 보험회사의 퇴출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에서 관할하므로 보험회사는 연방정부의 파산법에 의거해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없다. 퇴출 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가 설립되고 등록된 주(domiciled state) 보험감독청을 통해서 퇴출할 수 있다. 인수와 합병, 자발적 퇴출 및 비자발적 퇴출 등 퇴출의 형태를 막론하고 주 보험감독청의 동의가 필요하다.(Kwon외, 2005)

자발적 청산(Voluntary liquidation)의 경우 퇴출하고 싶은 보험회사는 주 보험감독청에 퇴출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의 각 채권자 그룹의 50%와 각 채권자 그룹 부채비중의 75%가 동의해야 자발적 청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 그룹에는 (1)모든 보험계약자 (2)보험계약자 외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3)그 외 법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가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모든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run-off에 해당하는 재보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18]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법원으로부터 자발적 청산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19] M&A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자발적 청산과 유사한 절차와 규제를 받는다. 다만 재정적 문제로 M&A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이것을 run-off with 재보험 포트폴리오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게 된다.

비자발적 청산(involuntary liquidation)의 경우에는 RBC 규제가 중심이다. RBC 규제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 규제와 마찬가지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인데 국내 지급여력 규제에 비해 복잡하지만 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인 경향은 보험회사가 RBC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입하지 않고 RBC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RBC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실보험회사는 먼저 현 상황을 극복할 수정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본전입 계획과 현 재정문제 극복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향후 재정상태 전망, 영업의 질적 내용 및 경영상의 문제점도 제출해야 한다. 수정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두 번째 규제 조치를 받게 된다.

---

18) run-off 란 신규영업은 하지 않고 기존 보유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9)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은 Rhode Island 보험법, http://www.rilin.state.ri.us/Statutes/과 뉴욕주 보험법, http://assembly.state.ny.us/leg/을 참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수정계획 제출뿐만 아니라 주보험감독청의 검사 대상이 된다. 이 검사와 추가적인 분석 후에 주보험감독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주보험감독청이 보험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단계이다.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보험회사 관리는 파산상태에 있는 보험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정상(technically solvent)이지만 향후 파산이 확실시 되는 보험회사도 포함한다. 감독당국이 보험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재활(rehabilitation) 또는 궁극적으로 보험회사를 청산(liquidation)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서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보험회사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기준은 통상 RBC(Risk-Based Capital)규제 등이 중심이 되지만, 주보험법에서는 재정적 이유 외에도 주보험감독청이 회사내 부정행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회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20]

일단 보험회사가 청산되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회사 대신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각 주의 보험보증기금은 대형 기업계약자보다는 개인 및 중소 법인계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퇴출하는 보험회사가 가계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경우 정부의 개입은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

20) 주 보험법은 통상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1) 보험회사가 횡령이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 (2) 법원의 명령에 반하여 부정직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3) untrustworthy한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보유한 채권(receivables)의 회수가능성이 낮을 때, (5) 조만간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이 확실시 될 때, (6) 보험감독청장의 동의없이 합병에 대한 initiative를 행사할 때, (7) 이사회의 다수, 다수 주주 또는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 자 들이 보험회사 재활(rehabilitation)을 요구할 때(로드아일랜드 보험법 참고)

2.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국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소관이다. 각 주의 보험감독청은 자신의 주에서 허가된 이른바 'domicile insurers'에 대하여 서면검사 또는 임점검사(on site examination)를 통해서 부실 보험회사를 감시해 왔다. 서면검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주보험감독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종 재무보고서이다. 보험회사들이 제출하는 각종 재무보고서는 증권시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회계일반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아닌 감독회계원칙(SAP: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에 준해서 작성된다. 감독회계원칙은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된다. 주보험감독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과 감독과 관련된 규제의 양 축은 리스크기준자본금(RBC) 규제와 FAST 시스템이 있다.

가. RBC(Risk-based Capital) 규제[21]

RBC제도는 보험회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기자본 수준을 결정하는 규제로서 우리나라의 지급여력규제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RBC 제도는 1980년대 기존의 최소자본금 규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안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보험감독청장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1990년 RBC(Risk-Based Capital) 기준이 그 당시 존재했던 최소자본금 규제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Grace, Harrington, Klein, 1998) 1994년에 NAIC는 생명보험회사를 위한 RBC 공식을 공표하였고

21) RBC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소개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국의 보험회사 퇴출규제의 골격이라는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논한다. RB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건식외(2002), 정중영(2004), 이기형외(2005) 및 IAA(2004)를 참고바람.

(손해보험의 경우 1995년) 그 후 각 주는 기존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RBC 규제로 대체하면서 RBC는 보험회사의 시장 퇴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 후 RBC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험회사 자기자본 규제의 한 축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RBC형태의 자기자본 규제를 준비 중에 있다. RBC 규제에서는 보험회사의 총수정자본(Total Adjusted Capital)이 RBC 기준수준 보다 하락하게 되면 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어있는데 현재 아래와 같은 4단계 제재수준이 있다.

<표 IV-3> 미국 RBC 기준에 의한 규제 내용

(Company Action Level): 보험회사의 총수정자본이 RBC 기준의 150%이상 200%보다 적은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어떻게 재정상태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주보험감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Regulatory Action Level): 보험회사의 총수정자본이 RBC 기준의 100%이상 150%보다 적은 경우, 주보험감독청장은 보험회사를 검사하고 재정 문제를 분석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Authorized Control Level): 보험회사의 총수정자본이 RBC 기준의 70%이상 100%미만인 경우, 주보험감독청장은 해당 보험회사를 Control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해당 보험회사의 순자산이 positive(자산-부채)라 하더라도 감독당국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험회사를 control할 권한을 갖는다.
(Mandatory Control Level): 보험회사의 총수정자본이 RBC 기준의 70% 미만인 경우, 주보험감독청장은 해당 보험회사를 인수(seize)해야 하는데 총수정자본이 70%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회사의 순자산이 기술적으로는 positive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 IV-4>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RBC 규제를 적용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생명보험회사 수는 1994년부터 꾸준히 하락하였다. 이는 1998년부터 건강보험회사를 생명보험회사와 분리해서 관리하여 생명보험회

사 수가 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미국 생보시장이 M&A 등을 통한 자발적 퇴출과 비자발적 퇴출로 시장 통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생명보험회사의 약 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94년의 경우 총 1,543개의 생명보험회사 중 1.8%에 해당하는 28개사가 조치를 받았으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200여개 회사가 RBC비율 때문에 주정부의 조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미국 생명보험회사 RBC 조치 적용비율 추이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조치 없음		1,515	1,494	1,429	1,339	1,312	1,157	1,183	1,130
조치 적용 회사	CAL	16	12	21	19	11	14	13	14
	RAL	2	5	4	3	4	5	6	7
	ACL	3	3	3	2	3	1	2	0
	MCL	7	3	6	6	4	1	2	2
	소계	28	23	34	30	22	21	23	23
합 계		1,543	1,513	1,463	1,369	1,334	1,178	1,206	1,153
조치 적용율(%)		1.8	1.3	2.3	2.2	1.6	1.8	1.9	2.0

자료 : NAIC, *Research Quarterly*, Winter 2002

<표 IV-5>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RBC 규제를 적용한 결과이다. 먼저 손해보험회사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특화된 손해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RBC 제재를 받은 회사는 1994년의 경우 전체 2,413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2.7%(65개)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3.0% 이상이 RBC 비율이 낮아서 주정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미국 손해보험회사 RBC 조치 적용비율 추이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조치 없음		2,348	2,346	2,358	2,400	2,383	2,298	2,340	2,381
조치 적용 회사	CAL	20	33	21	36	20	24	33	25
	RAL	13	15	19	11	14	13	19	25
	ACL	5	6	8	6	6	7	3	7
	MCL	27	22	28	21	24	26	28	37
	소계	65	76	76	74	64	70	88	94
합 계		2,413	2,422	2,453	2,474	2,447	2,368	2,423	2,475
조치 적용율(%)		2.7	3.1	3.1	3.0	2.6	3.0	3.4	3.8

자료 : NAIC, *Research Quarterly*, Winter 2002

<표 IV-6>는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RBC 규제를 적용한 결과이다.[22] 1998년의 경우 총 563개의 건강보험 회사중 20.8%에 해당하는 117개 회사가 RBC비율 때문에 주 정부의 조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회사의 부실 비율은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미국 건강보험회사 RBC 조치 적용비율 추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조치 없음		446	421	440	564
조치 적용 회사	CAL	36	42	48	37
	RAL	29	46	44	33
	ACL	22	16	22	17
	MCL	30	19	26	21
	소계	117	123	140	108
합계		563	544	580	672
조치 적용율(%)		20.8	22.6	24.1	16.1

자료 : NAIC, *Research Quarterly*, Winter 2002

22) 1998년부터 NAIC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회사를 분리해서 따로 RBC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 미국의 재무 규제 및 부실사 감시

RBC 제도가 등장하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주 보험감독청에서는 주로 NAIC의 Solvency Screening System인 IRIS 비율 분석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보험회사를 선발 하였다. IRIS 비율은 1970년대부터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는 기본 시스템이었다. IRIS 시스템의 첫 단계인 비율 계산단계(computational phase)에서는 11개의 IRIS 비율을 계산하고 업계 평균 범위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가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보험회사는 둘째 단계인 분석단계(analytical phase)로 넘어간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보험회사의 선별은 비율지표(IRIS비율 11개중 4개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포함한 기초 분석을 통해서 결정된다. 분석단계를 통해서 보험회사들은 1, 2, 3, no priority 및 no synopsis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각 주 감독자들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점검사 및 감독 등을 실시하였다.

현재 NAIC는 IRIS 시스템 외에 Scoring System과 보험회사 프로필 시스템(Insurer Profile System)을 포함한 FAST(Financial Analysis and Solvency Tracking)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재무분석뿐만 아니라 부실가능 보험회사를 선별하고 분석한다. (NAIC, 2005) Scoring System은 FAST 시스템의 핵심으로 'FAST Scoring System'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약 25개의 재무비율과 변수(lagged variable 추가 사용)를 사용하여 각 비율에 대해서 일정한 가중치를 배정하여 총 FAST Score를 계산한다. 이 때 사용하는 변수는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가중치가 적용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 FAST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추가 분석을 위한 즉각조사대상(Immediate), 우선조사대상(Priority) 및 통상조사대상(Routine)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FAST Score 계산 및 우선순위 선정은 객관적인 통계분석 결과 외에 감독당국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 등

도 고려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FAST Scoring System의 목적은 첫째,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국보험회사"(nationally significant insurers: 미국내의 17개주 이상에서 보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지난 3년간의 평균 수입보험료가 일정 규모 이상인 보험회사)를 선별하는데 있다. 두번째 목적은 문제 보험회사에 대한 각 주의 보험감독에 대해서 NAIC가 peer review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NAIC의 FAWG(Financial Analysis Working Group)이 행하고 있는 peer review는 주 보험당국이 부실한 전국보험회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FAST Scoring System의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NAIC의 재무분석팀(Financial Analysis Division)에서 보험회사별 FAST점수를 계산하고 이 결과에 따라 심층분석을 위한 보험회사를 우선순위화 한다. FAWG는 보험회사의 FAST 점수를 분석한 후 peer review가 필요한'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한다. 대상 보험회사에 대해서 NAIC는 해당 주 보험감독자에게 추가적인 검사 및 감독을 요청하게 되는데, 주 보험감독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모니터링만 하지만, 주 보험감독자의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해당 주에 감독조치 시정을 건의한다. 만일 해당 주 보험감독당국이 NAIC의 시정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NAIC는 타 주 감독자에게 문제 보험회사를 통보하고, 문제 보험회사에 대한 조치를 조율하게 된다. FAST시스템은 보험회사를 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분해서 FAST점수를 계산한다. FAST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사용하는 FAST 변수는 <표 IV-7>와 같다.

<표 IV-7> FAST Scoring System 사용 변수

FAST Scoring System 사용 변수	IRIS 사용
Net Premium written to surplus (I)	O
Gross Premium written to surplus	X
Reserves to surplus	X
Growth in net premium written (I)	O
Growth in gross premium written	X
Surplus aid to surplus (I)	O
Investment yield (I)	O
Growth in surplus (I)	O
Tow-year reserve development to surplus (I)	O
Change in combined ratio	X
Gross expenses to gross premiums written	X
Growth in gross expenses	X
Growth in liquid assets	X
Growth in agents' balance	X
Reinsurance recoverable on paid losses to surplus	X
Reinsurance recoverable on unpaid losses to surplus	X
Premiums in long-tailed lines to total premiums	X
Affiliate investment to surplus	X
Affiliate receivables to surplus	X
Miscellaneous recoverables to surplus	X
Non-investment grade bonds to surplus	X
Other invested assets to surplus	X
Managing producer exposure 1	X
Managing Producer exposure 2	X
Cash outflow test	X

자료 : Grace외 (1998)

FAST 시스템의 세번째 재무건전성 감독 도구는 보험회사 프로필시스템(Insurer Profile System)이다. 보험회사 프로필시스템은 분기별, 연도별로 보험회사에 대한 단면적인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재무상태 추이 정보를 분석해서 해당 보험회사가 등록된 주 보험감독청

에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본으로 주 보험감독청은 보험회사에 대해 임점검사 등 세부 검사를 실시한다.

3. 미국 보험시장의 퇴출에 대한 실증 분석[23)]

가. 분석의 개요

Jensen and Meckling(1976)의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퇴출기업의 경영자는 보험가입자나 주주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퇴출 형태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자발적 청산은 Karakaya(2000) 주장처럼 현재 시장이나 영업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일 수 있는데 자발적 청산 후 청산된 보험회사의 주주는 청산 후 잔존가치(salvage value)를 확보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보험회사를 관리하는 비자발적 청산의 경우 정보비대칭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주보험감독청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철학에 의해서 퇴출의 속도와 비용이 다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 주장일 뿐 퇴출기업이 특정 퇴출형태를 선택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Resnick,1998). 보험산업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퇴출 규제를 분석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Kwon외, 2005)

본 분석에서는 이론적, 개념적 논의보다는 보험회사의 시장퇴출 형태와 보험회사 특성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미국전체 손해보험회사의 6년간 재무제표(1999년-2004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24)] 데이터

---

23) 본 분석은 World Insurance, Risk and Economics Congress에서 발표된 Kim외(2005)의 일부를 기초로 1차 수정된 바 있고, 검토자의 건설적인 조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수정되었음을 밝힌다.

24)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분석에서 생명보험회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퇴출분석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미국 생명보험회

소스는 A.M. Best자료였으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높은 독립변수를 추출한후 다항로짓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퇴출형태(종속변수)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를 파악한다.

퇴출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A.M Best's Reports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발표한 자료에서 추출한다. 보험회사 퇴출 형태는 인수와 자발적 퇴출(VL: voluntary liquidation), 합병(M&A)에 의한 퇴출, 비자발적 퇴출(IL: Involuntary liquidation) 그리고 재활(Rehabilitation)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재활의 경우는 재활기간 후 해당 보험회사가 생존하여 정상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시 M&A 또는 감독당국에 의한 비자발적 퇴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하고 Shell 보험회사(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라이센스만 있는 회사)도 분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한다.

나. 실증분석 자료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총 보험회사의 수는 2,400개인데 이 중 정상 회사의 수(시장 존속사)가 2,286개였고 퇴출사는 114개(자발적 퇴출사 = 59, M&A 퇴출 = 20, 비자발적 퇴출 = 35)였다. 분석에 사용된 퇴출사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6개, 2003년 33개, 2002년 23개, 2001년 39개 및 2000년 13개였다.[25]

분석 기간 중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 금융환경 변화, 그리고 보험제도 및 소비자성향 변화 등 구조적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도별 퇴출한 보험회사의 수에 비례하여 정상 보험회사도 무작위로 연도별로 배정하는 BarNiv and Hathorn(1997)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 데이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국 손해보험회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25) 퇴출사 리스트와 주요 정보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보험시장에서 퇴출한 회사 전체를 퇴출회사(Exit Firms)로 분류하고 매년 퇴출회사(Exit Firms)의 수에 비례하여 정상회사를 다음과 같이 비례추출방식으로 각 연도에 배정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로 퇴출된 보험회사(EXITt)를 5년간 퇴출한 총 퇴출보험회사 수(Total EXIT 114개)로 나누어 연도별 퇴출 보험회사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에 따라 각 연도별 무작위 표본으로 배정될 정상 보험회사(시장 존속사) 수를 정한다. 연구기간 퇴출 보험회사의 총 수는 114개이며 그 중 2000년 퇴출 보험회사의 수는 13개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회사 2,286개의 11.4% (13/114 = 0.114)인 260개를 무작위로 '2000년 NORMAL'란 꼬리표를 달아서 구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0년 260개, 2001년 782개, 2002년 462개, 2003년 661개, 2004년 121개의 정상보험회사를 무작위로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퇴출 보험회사의 퇴출 1년 전 자료가 실증분석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상보험회사의 자료도 개별 회사가 배정된 연도 T년의 1년전인 T-1년의 자료가 실증분석에 이용된다. 즉, '2000년 NORMAL'로 배정된 회사는 자사의 1999년 통계가 실증분석에 사용되고 '2001년 NORMAL'로 배정된 회사는 자사의 2000년 통계가 실증분석에 사용된다.

다. 적용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4개의 퇴출형태를 명목형 범주(0= 시장 존속사, 1= 자발적 퇴출사, 2= M&A 퇴출사, 3= 비자발적 퇴출사)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퇴출형태 범주간의 odd ratio[26]의 자연대수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기준범주(Basis)를 시장 존속사(0)로 하는 경우 종속변수는 $\ln\frac{P_i}{P_0}$(i=1,2,3), 기준범주를 자발적

26) 또는 리스크비(risk ratio)라고도 불림.

퇴출사(1)로 하는 경우 종속변수는 $\ln\frac{P_i}{P_1}$(i=0,2,3), 기준범주를 M&A퇴출사(2)로 하는경우 종속변수는 $\ln\frac{P_i}{P_2}$(i=0,1,3), 그리고 기준범주를 비자발적 퇴출사(3)로 하는경우 종속변수는 $\ln\frac{P_i}{P_3}$(i=0,1,2)가 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주로 보험회사의 파산 및 M&A와 관련된 연구)에 사용된 변수와 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사용한다. 변수는 재무특성 변수, 영업특성 변수, 조직특성 변수 그리고 환경특성 변수로 크게 나눈다.

퇴출형태와 보험회사의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라는 사실과 종속변수인 4가지의 퇴출 형태가 불규칙적인 MNL 모형의 특성 때문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일정한 방향성(독립변수의 사인)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 문헌과 직관으로 일부 독립변수와 일부 퇴출형태의 경우 간에 어떤 관계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가) 재무관련 변수

기존 연구(예; Trieschmann and Pinches, 1973)에 의하면 퇴출 보험회사는 정상 보험회사와 재무적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퇴출형태별로도 그 특성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변수 선정은 Trieschmann and Pinches(1973), Ambrose and Seward(1988) 그리고 BarNiv and McDonald(1992) 등의 해외연구와 이순재와 김재현(2003)와 금융감독원(2003) 등의 국내연구를 참고했다. 재무특성 변수는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및 변동성 변수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수익성 변수는 ROA, ROE, IRIS6 (2년평균투자수익율)외에 세전수입을 순보험료로 나눈 ROR(return on operation)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어서 퇴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수익성은 정상회사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계 보험회사의 경우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익성이 오히려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M&A 퇴출의 경우 두가지 상반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비자발적 퇴출과 유사한 성격, 즉 한계상황에 있는 회사가 비자발적 퇴출 대신 M&A 퇴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익성이 정상회사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지만, 피합병 보험회사의 자체 경쟁력 또는 합병사와의 시너지효과 때문에 피합병된 경우에는 수익성이 정상회사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동성변수는 IRIS9(agents balance/net premium)를 사용하였는데 이 변수는 순보험료 대비 대리점미수금으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퇴출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건전한 보험회사의 경우 이 비율이 낮은 편이 보편적인데 퇴출형태별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가설은 설정하기 어렵다.

안정성변수는 BCAR(Best's capital adequacy ratio), IRIS2(net premium/surplus) 및 IRIS4(surplus aid /surplus)를 사용하였다. BCAR은 평가기관인 A.M Best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종합변수로 보험회사의 필요잉여금(required surplus) 대비 수정잉여금(adjusted surplus)의 비율이다.[27] IRIS2는 잉여금 대비 순보험료로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퇴출 보험회사가 시장존속 보험회사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M&A 퇴출사의 경우 한계상황에 있는 보험회사는 자발적(또는 비자발적) 퇴출사와 비슷하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IRIS2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IRIS4는 재보험 등을 통해서 잉여금을 증가시킨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변동성변수로는 IRIS3(순보험료의 변화), IRIS7(잉여금의 변화), IRIS11(2year reserve development/surplus)가 사용되었다. IRIS3과

27) 자세한 비율계산 과정은 2005 Best's Insurance Report-P/C를 참고할 것

IRIS7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변수이지만 IRIS11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IRIS11은 과거 2년간 책임준비금(reserve)을 추산한 것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설명하는 변수이다. 이 수치가 1보다 높게 나오면 손실 예측치에 비해서 준비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수치가 1보다 낮으면 손실 예측치에 비하여 준비금이 과하다는 의미한다.

<표 IV-8> 일차적으로 사용한 총 독립변수

구 분	변수구분	변 수 명	설 명
재무변수	수익성	ROA	net income/total assets
		ROE	net income/policyholders' equity
		ROR	세전영업이익(operating income)/net premium
		IRIS6	자산운용수익율(2년평균)
	유동성	IRIS9	Agents' balance/surplus
	안정성	BCAR	Best's capital adequacy ratio
		IRIS2	net premium/잉여금(surplus)
		IRIS4	surplus aid/surplus
	변동성	IRIS3	순보험료의 변화
		IRIS7	잉여금의 변화
		IRIS11	2 year reserve development/surplus
영업변수	규모	Ln(자산)	총 자산의 log
		surplus	계약자 잉여금
		NPW	순보험료(거수보험료-재보험료)
	영업효율	LR1	순손해율(pure loss ratio)/premiums earned
		LR2	(losses incurred+LAE)/premium earned
		ER	사업비율
		CR	합산비율
		O/R	operating ratio (combined - investment ratio)
	영업특성	종목집중(분산)	종목 집중화(다각화) 정도
		판매채널	agency, direct writer or mixed
조직변수	조직특성	회사형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구분
환경변수	환경특성	주보험감독청장	elected or appointed

따라서 재무 건전성이 불량한 회사는 IRIS11이 1 보나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반면, 재무 상태가 우량하거나 보수적으로 준비금을 책정한 회사는 IRIS11이 1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퇴출형태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 지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나) 영업관련 변수

영업관련 변수도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영업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발굴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수들은 크게 사업규모 변수, 영업효율성 변수 및 영업특성 변수로 나눌 수 있다. 사업규모 변수는 Ln(자산)과 계약자잉여금을 사용하였다. 보험회사업 초기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영업개시 직후의 소규모 보험회사가 퇴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퇴출 보험회사는 퇴출형태와 관계없이 시장존속사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퇴출형태간의 사업규모 차이는 개별 보험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다. 영업효율성 변수로는 순손해율1(pure loss ratio)/premiums earned), 순손해율2(losses incurred+LAE)/premium earned), 사업비율, 합산비율 및 활동비율(operating ratio)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활동율이란 세전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을 순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영업특성변수 중 기존 유사 연구에 없는 변수는 보험종목 다각화(집중화)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 변수는 특정 종목에 집중한 보험회사는 종목간에 리스크 분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퇴출될 리스크가 높을 것이라는 주장과 경쟁력 있는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는, 예를 들면 개인용자동차 등 특정 종목에 집중하므로 종목 다각화와 파산 또는 퇴출형태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다) 조직특성 변수

조직특성 변수는 Mayers and Smith(1988)이후 보험회사의 효율성이

나 성과연구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조직특성 변수로는 회사형태를 나타내는'상호회사 vs 주식회사'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지배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자료 확보에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못했다.

(라) 환경특성 변수

주보험감독청장이 선출직이냐 (elected) 아니면 임명직이냐 (appointed)에 따라서 퇴출형태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도 실증분석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선출직인 경우 유권자이기도 한 보험가입자의 반응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보험가입자에게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퇴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특정 퇴출 형태를 다른 형태에 비해서 더 선호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그 외에 보험회사가 주보험감독청장에게 퇴출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실제 퇴출시점까지 걸린 시간과 비용은 주별로 다를 것이며 퇴출형태별로도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서 차후 연구로 미루었다.

라.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결과

다항로짓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기 전에 Barniv and Hathorn(1997)처럼 모든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대하여 일대일로 회귀분석하여 통계적 유의성(P-value)이 0.25이하인 변수만을 일차적으로 선별과정(screening)하였다. 일차 선별과정을 통과한, 최소한의 유의성이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

<표 IV-9>는 기술적 분석의 결과로 선발 변수에 대해서 관측치(N), 표준편차(SD), 평균(Mean), 중위값(Median), 최대값 및 최소값을 퇴출형태별로 보여주고 있다. 퇴출형태간 관측치 수(N)의 차이가 많고 일부 극단적인 값이 존재해서 평균값보다는 중위값을 중심으로 기술적 분석

내용을 살펴본다. 판매채널 변수와 종목분산 변수의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해당 데이터 값이 없어 관측 수(the number of observations)가 타 변수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수익성 지표 중에서 일차 선별과정을 통과하여 기술적 분석 대상이 된 변수는 ROE, ROA 그리고 IRIS6(투자수익률) 였다. ROE는 M&A 퇴출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시장 존속사였다.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보험회사들이 일부 포함되어서인지 자발적 퇴출사의 경우 중위값이 -23.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ROA와 IRIS6(투자수익율)은 네 그룹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 유동성지표 중 종속변수와 회귀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변수는 IRIS9(대리점 미수금/잉여금)이다. 이 변수는 잉여금 대비 대리점 미수금 규모를 나타내는 값으로 클수록 유동성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출형태별로는 자발적 퇴출사가 IRIS9 중위값이 가장 높았고, M&A 퇴출사와 비자발적 퇴출사는 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안정성 지표 중 일차 선별과정을 통과한 변수는 보험회사의 인수레버지리를 나타내는 IRIS2(순보험료/잉여금)인데 자발적 퇴출사의 중위값이 205로 컸지만 표준편차 또한 가장 커서 회사별 차이도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장 존속사와 M&A 퇴출사는 각각 65와 18이었으며 비자발적 퇴출사는 0으로 IRIS2가 가장 낮았다. 비자발적 퇴출사의 중위값이 0인 것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순보험료가 제로인 상태의 회사가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동성 지표 중에서 일차 선별과정을 통과하여 기술적 분석 대상 변수는 IRIS3(순보험료의 변화)과 IRIS11(2 year reserve development/잉여금)였다. M&A 퇴출사와 비자발적 퇴출사는 IRIS3 중위값이 비슷하게 조사된 반면 자발적 퇴출사의 중위값이 마이너스로 퇴출 직전 연도에 영업이 급격히 축소된 회사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규모 변수 중에서는 기술적 분석대상 변수는 Ln(자산)과 NPW(순보험료)였다. Ln(자산)의 중위값 크기는 시장 존속사, M&A 퇴출사, 자발

적 퇴출사 및 비자발적 퇴출사 차례로 나타났다. NPW의 크기는 자발적 퇴출사, 시장 존속사, M&A퇴출사 및 비자발적 퇴출사의 차례였다.

<표 IV-9> 기술적 분석 자료

	시장 존속사			자발적 퇴출사			M&A 퇴출사			비자발적 퇴출사		
변수	N[3]	중위값	최소	N	중위값	최소	N	중위값	최소	N	중위값	최소
	표준편차	평균	최대	표준편차	평균	최대	표준편차	평균	최대	표준편차	평균	최대
감독청장[1]	2286	0.2	0	59	0.24	0	20	0.11	0	35	0.09	0
	.01		1	.06		1	.11		1	.05		1
판매채널[2]	2211	0.38	0	39	0.15	0	17	0.18	0	22	0.41	0
	.01		2	.07		2	.10		2	.16		2
Ln (자산)	2286	10.63	6.15	59	10.12	6.70	20	10.38	7.22	35	8.63	6.50
	.04	10.89	18.0	.19	10.47	13.86	.48	10.85	15.33	.28	8.87	14.2
IRIS2	2286	65.0	0	59	205	0	20	18.5	0	35	0	0
	2.24	89.1	999	51.38	397	999	8.63	34.5	103	31.99	91.1	999
IRIS3	2286	5.0	-99.0	59	-7.0	-99.0	20	1.0	-99	35	0	-99.0
	3.92	47.1	999	24.87	23.64	999	48.7	51.1	999	48.7	75.03	999
IRIS6	2286	5.0	0	59	5.0	0	20	5.0	1.0	35	5.0	0
	.04	5.1	26.0	.45	5.64	23.0	.43	4.8	8.0	.52	5.6	20
IRIS9	2286	4.0	0	59	19.0	0	20	0.5	0	35	0	0
	1.17	15.14	999	39.39	137.92	999	6.35	6.0	186	1.53	12.63	186
IRIS11	2286	0.0	-99.0	59	11.0	-21.0	20	0	-16.0	35	0	-99.0
	1.46	2.91	999	23.94	67.07	999	3.57	2.55	51.0	6.44	9.57	171
ROE	2286	3.55	-99.9	59	-23.9	-99.9	20	4.7	-20.2	35	2.4	-84.3
	.40	1.79	226.1	22.47	-4.52	999.9	1.94	1.9	16.1	4.34	-8.03	36.7
ROA	2286	5..2	0	59	5.20	0	20	4.55	1.0	35	5.30	0
	.04	4.98	26.0	.44	5.60	23.10	.41	4.66	7.7	.55	5.13	19.5
NPW	2286	101741	-9097	59	120771	-1061	20	532	-3659	35	0	0
	509	9242	99943	2963	9807	87363	4997	11362	87918	1113	3139	27569
종목분산	1906	0.27	0	51	.40	0	17	0.23	0	15	0.36	0
	.01	.39	1.0	.08	.54	1.0	.09	.43	1.0	.09	.42	1

주 : 1) 0 = 지명직, 1=선출직

2) 0 = 대리점 중심, 1= 직판채널 중심, 2= 혼용

3) N = 변수별 관측데이터 수

영업특성 변수 중 판매채널과 종목분산이 기술적 분석 대상이었다. 하지만 판매채널은 자발적 퇴출사와 M&A 퇴출사의 평균값은 각각

0.15와 0.18로 대체로 낮고 시장존속사와 비자발적 퇴출사의 평균값은 각각 0.38과 0.41로 나타났다.[28] 종목분산의 경우 뚜렷한 차이는 없었지만 자발적 퇴출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비자발적 퇴출사, 시장존속 및 M&A 퇴출사 순이었다.

환경변수인 주보험감독청장 변수도 일차 선별과정을 통과했다. 평균값을 보면 M&A퇴출사가 0.35, 자발적 퇴출사는 0.24 그리고 시장 존속사는 0.2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출사는 0.09로 매우 작아 지명직 주보험감독청장이 있는 주에서 비자발적 퇴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일차적으로 선별된 독립변수중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s)를 대상으로 Pearson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가능성이 있는 변수가 MNL(multinomial logistic) 회귀식에 포함되는 경우 분석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IV-10>처럼 일부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ROA와 IRIS6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0.851)를 보였고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인 Ln(자산)과 NPW(순보험료수입)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0.59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동성 지표인 IRIS9와 안정성 지표인 (IRIS2)의 상관관계도 0.404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의 세부 항목별로 하나의 변수만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변수 선택은 일차 선별과정을 위해 수행된 일대일 회귀분석 결과 유의성이 가장 높은 변수를 기본으로 세부 항목내의 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수익성은 ROA, 규모는 Ln(자산),

---

28) 시장존속사: 대리점중심(0)=1545, 직판중심(1)=491, 혼용(2)=175,
자발적 퇴출사: 대리점중심 = 34, 직판중심 = 4, 혼용=1
M&A 퇴출사: 대리점중심 = 14, 직판중심=3
비자발적 퇴출사: 대리점중심=16, 직판중심=3, 혼용=3

안정성은 IRIS2, 변동성은 IRIS3, 영업특성은 종목분산과 판매채널, 환경변수는 주보험감독청장 변수를 선정하였다. 유동성지표를 나타내는 IRIS9는 타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탈락시켰다.

<표 IV-10>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ROA**	**ROE**	**IRIS6**	**IRIS9**	**IRIS2**	**IRIS11**	**ln자산**	**NPW**
ROA	1	**0.094 (.000)**	**0.851 (0.000)**	-0.015 (.472)	0.014 (.501)	**-0.062 (.002)**	**0.113 (.000)**	**0.073 (.000)**
ROE		1	**0.093 (.000)**	**0.090 (.000)**	-0.026 (.209)	**-0.054 (.008)**	-0.026 (.209)	-0.001 (.951)
IRIS6			1	-0.025 (.215)	-0.019 (.355)	0.007 (.719)	0.045 (.026)	0.029 (.152)
IRIS9				1	**0.404 (.000)**	**0.114 (.000)**	0.018 (.380)	0.032 (.120)
IRIS2					1	**0.212 (.000)**	**0.160 (.000)**	**0.313 (.000)**
IRIS11						1	-0.046 (.026)	-.037 (.066)
ln자산							1	**0.599 (.000)**
NPW								1

마. 퇴출 선택 모형(Exit Choice Models)을 이용한 실증분석

통상 로짓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_x = \frac{\exp(\beta_0 + \beta_1 x)}{1 + \exp(\beta_0 + \beta_1 x)} \quad \text{----------} \quad (1)$$

이를 선형화시키면

$$\log\left(\frac{P_x}{1-P_x}\right) = \beta_0 + \beta_1 x \quad \text{----------} \quad (2)$$

이 된다. 여기서 $\log\left(\frac{P_x}{1-P_x}\right)$를 로짓이라 한다.

다항로직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은 이항 로짓모형을 범주가 n인 모형으로 확장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29]

$$P_j = \frac{e^{\beta_j X}}{\sum_{j=1}^{K+1} e^{\beta_j X}} \text{ , (j=1,.....K+1)} \quad \text{-------} \quad (3)$$

여기서 β_{k+1} 는 normalization을 위하여 0(제로 벡터)으로 하면,

$$P_{k+1} = \frac{1}{\sum_{j=1}^{K+1} e^{\beta_j X}} \quad \text{----------} \quad (4)$$

따라서 j 로짓의 다음의 형태를 가진다.

$$\log \frac{P_j}{P_{k+1}} = \beta_j X \text{ (j = 1,.....K)} \quad \text{----------} \quad (5)$$

보험회사 i 가 퇴출형태 j를 선택할 확률을 P_{ij}라고 하고,

$\pi_{ij} = \left(\frac{P_{ij}}{1 - P_{ij}} \right)$ 오즈(odds)라고 할 때,

다항로짓모형에서의 종속변수 Y_{ij} 는 퇴출형태 범주간의 오즈비(odds ratio)의 자연대수 형태를 취하게 된다. X_{ij}를 Y변수와 B_j계수를 통해 선형적 관계를 갖는 독립변수 군으로 설정하는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_{ij} = \log\left(\frac{\pi_{ij}}{\pi_{iJ}} \right) = \alpha_j + \sum_{j=1}^{k} \beta_{ij} X, \quad \text{j= 1,....,J-1} \quad \text{--------} \quad (6)$$

이 모형을 이용하여 J-1개의 로짓방정식에 대한 서로 다른 모수들을 추정하게 된다. 즉, 기준범주(basis)와 짝 지어진 종속변수의 명목 변수에 따라서 효과를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다.

<표 IV-11>은 일차 및 이차 선별과정을 통해서 선별된 독립변수만을 사용한 다항로짓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

29) 다항로짓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rooah(2001)을 참고할 것.

<표 IV-11> 일차 다항로짓모형 변수별 검정 결과

	-2log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546.329	-	-	-
Ln(자산)	564.510	18.18	3	.000
IRIS2	616.609	70.28	3	.000
IRIS3	555.067	8.738	3	.033
ROA	555.625	9.296	3	.026
종목분산	546.679	0.350	3	.950
주보험감독청장	550.169	3.840	3	.279
판매채널	552.780	6.451	6	.375

일차적으로 시행된 다항로짓모형 분석결과 독립변수 중에서 종목분산, 판매채널 및 주보험감독청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Ln(자산), IRIS2, IRIS3 및 ROA는 임계치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종 모형에서는 이 네 개의 변수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V-12>는 최종 다항로짓모형의 독립변수에 대한 우도비 검정 결과이다.

<표 IV-12> 최종 다항로짓모형 우도비 검정 결과

	-2log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993.165	-		-
Ln(자산)	1022.731	61.776	3	.000
IRIS2	1085.731	124.380	3	.000
IRIS3	963.593	2.638	3	.451
ROA	971.386	10.432	3	.015

주 : Pseudo R제곱: Nagelkerke=.197, McFadden=.162

최종 다항로짓모형은 전체 모형 대하여 -2log우도=960.955, 카이제곱 = 186.264, 유의확률 = .000으로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에 대한 우도비 검정결과 IRIS3을 제외하곤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최종 모형으로 모수값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표 IV-13> 최종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1

기준범주 = 시장 존속사(0)

구 분	변수명	β 추정치	Wald 통계량	Probability	Exp(β)
1 (자발적 퇴출사)	절편	-2.828	8.530	.003	
	Ln(자산)	-.242	7.255	.007	.785
	IRIS2	.005	118.886	.000	1.005
	IRIS3	-.002	1.672	.196	.998
	ROA	.165	9.733	.002	1.180
2 (M&A 퇴출사)	절편	-5.068	13.748	.000	
	Ln(자산)	.132	1.1854	.277	1.141
	IRIS2	-.013	6.417	.011	.987
	IRIS3	.000	.002	.965	1.000
	ROA	-.085	.488	.485	.919
3 (비자발적 퇴출사)	절편	3.551	8.614	.003	
	Ln(자산)	-.881	41.844	.000	.414
	IRIS2	.002	3.698	.054	1.002
	IRIS3	.000	.252	.615	1.000
	ROA	.129	3.546	.060	1.138

다항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는 퇴출형태 범주간의 오즈비(odd ratio)의 자연대수형태를 취하게 된다. 상기 <표 IV-13>은 종속변수 기준범주(Base)를 시장 존속사(0)로 했을 때 자발적 퇴출사(1), M&A 퇴출사(2), 비자발적 퇴출사(3)로 각각 짝지어진 3개의 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자발적 퇴출사(1)와 짝지어진 식의 경우 IRIS2, ROA 및 Ln(자산)은 전부 임계치 0.01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기준 범주인 시장 존속사와 자발적 퇴출사의 특성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M&A 퇴출사(2)와 짝지어진 경우 IRIS2만 어느 정도 통계적 유의성(P=0.011)이 있어 기존범주인 시장 존속사와 M&A 퇴출사는 보험회

사의 특성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자발적 퇴출사(3)와 짝지어진 경우 Ln(Asset)은 P value =0.00 수준에서, 그리고 IRIS2는 .054 및 ROA는 .06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시장 존속사와 비자발적 퇴출사의 특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 14>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 2 [1)]

기준범주= 자발적 퇴출사(1)

구 분	변수명	β 추정치	Wald 통계량	Probability	Exp(β)
0 (시장 존속사)	절편	2.828	8.530	.003	
	Ln(자산)	.242	7.255	.007	1.274
	IRIS2	-.005	118.886	.000	.995
	IRIS3	.002	1.672	.196	1.002
	ROA	-.165	9.733	.002	.848
2 (M&A 퇴출사)	절편	-2.240	1.802	.179	
	Ln(자산)	.374	6.174	.013	1.453
	IRIS2	-.018	12.868	.000	.982
	IRIS3	.002	1.039	.308	1.002
	ROA	-.250	3.596	.058	.779
3 (비자발적 퇴출사)	절편	6.378	17.523	.000	
	Ln(자산)	-.639	15.868	.000	.528
	IRIS2	-.003	8.495	.004	.997
	IRIS3	.002	1.964	.161	1.002
	ROA	-.036	.192	.661	.965

주 : 1) 기준(BASE) : 자발적 퇴출사(1)
IRIS2= 잉여금대비순보험료, IRIS3= 순보험료의 변화,
ROA = 총자산수익율.

상기 <표 IV-14>는 자발적 퇴출사(1)를 기준범주로 한 분석 결과이다. 시장 존속사(0)를 짝으로 한 종속변수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M&A(2)를 짝으로 한 경우 IRIS2 (유의확률=0.000), Ln(자산) (유의확률 =0.013) 및 ROA (유의확률=0.058)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자발적 퇴출사(1)와 M&A 퇴출사는 이 세 개의 독립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비자발적 퇴출사(3)와 짝으로 된 종속변수의 경우에도 Ln(자산)이 유의확률 0.000으로, IRIS2가 유의확률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이 두 독립변수에서 자발적 퇴출사(1)과 비자발적 퇴출사(2)의 차이를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표 IV- 15>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 3[1)]

기준범주 = M&A 퇴출사(2)

구 분	변수명	β 추정치	Wald 통계량	Probability	Exp(β)
0 (시장 존속사)	절편	5.068	13.748	.000	
	Ln(자산)	-.132	1.184	.277	.876
	IRIS2	.013	6.417	.011	1.013
	IRIS6	.000	.002	.965	1.000
	ROA	.085	.488	.485	1.088
1 (자발적 퇴출사)	절편	2.240	1.802	.179	
	Ln(자산)	-.374	6.174	.013	.688
	IRIS2	.018	12.868	.000	1.018
	IRIS6	-.002	1.039	.308	.998
	ROA	.250	3.596	.058	1.284
3 (비자발적 퇴출사)	절편	8.619	22.493	.000	
	Ln(자산)	-1.013	31.025	.000	.363
	IRIS2	.015	8.322	.004	1.015
	IRIS6	.000	.063	.803	1.000
	ROA	.214	2.381	.123	1.239

주 : 1) 기준(BASE): M&A 퇴출사(2),
IRIS2= 잉여금대비순보험료, IRIS3= 순보험료의 변화,
ROA = 총자산수익율.

상기 <표 IV-15>는 M&A 퇴출사(2)를 기준범주로 한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시장 존속(0) 보험회사와 짝이 된 경우와 자발적 퇴출사(1)와 짝이 된 경우는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다. 비자발적 퇴출사(3)와 짝이 된 경우 Ln(자산)은 0.000 및 IRIS2는 0.004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M&A 퇴출사(2)과 비자발적 퇴출사(3) 간의 차이를 두 독립변수에서 인

지할 수 있다.

<표 IV- 16>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 4[1)]

기준범주=비자발적 퇴출사(3)

구 분	변수명	β 추정치	Wald 통계량	Probability	Exp(β)
0 (시장 존속사)	절편	- 3.551	8.614	.003	
	Ln(자산)	.881	41.844	.000	2.413
	IRIS2	- .002	3.698	.054	.998
	IRIS3	.000	.252	.615	1.000
	ROA	- .129	3.546	.060	.879
1 (자발적 퇴출사)	절편	- 6.378	17.523	.000	
	Ln(자산)	.639	15.868	.000	1.895
	IRIS2	.003	8.495	.004	1.003
	IRIS3	- .002	1.964	.161	.998
	ROA	.036	.192	.661	1.037
2 (M&A 퇴출사)	절편	- 8.619	22.493	.000	
	Ln(자산)	1.013	31.025	.000	2.753
	IRIS2	-.015	8.322	.004	.985
	IRIS3	.000	.063	.803	1.000
	ROA	-.214	2.381	.123	.807

주 : 1) 기준(BASIS): 비자발적 퇴출사(3),
IRIS2= 잉여금대비순보험료, IRIS6= 자산운용수익율,
ROA= 총자산수익율

비자발적 퇴출사(3)와 짝이 된 분석 결과는 이미 앞의 표 설명시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한다.

4. 실증 분석 결과의 종합

다항로짓모형의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아래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퇴출형태간 오즈비($\frac{\pi_i}{\pi_0}$) 결과 요약

오즈비 / 변수	$\frac{\pi_1}{\pi_0}$	$\frac{\pi_2}{\pi_0}$	$\frac{\pi_3}{\pi_0}$	$\frac{\pi_2}{\pi_1}$	$\frac{\pi_3}{\pi_1}$	$\frac{\pi_3}{\pi_2}$
자산규모 Ln(자산)	**0.785**	NS	**0.414**	**1.453**	**0.528**	**.363**
IRIS2 (순보험료/잉여금)	**1.005**	**0.987***	**1.002**	**0.982**	**0.997**	**1.015**
IRIS3 순보험료 변화	NS	NS	NS	NS	NS	NS
ROA (순수입/ 자산)	**1.180**	NS	**1.138**	**.779**	NS	NS

주 : π_0 =시장 존속 확률, π_1=자발적 퇴출 확률

π_2=M&A 퇴출 확률, π_3=비자발적 퇴출 확률

NS(Not Significant) = 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없음

유의확률=0.011.

독립변수중 보험회사 규모를 대리하는 Ln(자산)은 퇴출 형태간의 차이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시장 존속사와 M&A 퇴출사간에는 보험회사 규모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퇴출 형태간의 보험회사 규모의 차이는 오즈비가 1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30] 분석 결과 $\frac{\pi_1}{\pi_0}$(자발적 퇴출사 대 시장 존속사)은 0.785로 Ln(자산)이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오즈비는 0.785로 자발적 퇴출 가능성은 시장 존속 가능성의 78.5% 밖에 미치지 못했다. $\frac{\pi_3}{\pi_0}$(비자발적 퇴출사 대 시장 존속사)는 0.414로 Ln(자산)이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출 가능성은 시장 존속 가능성의 41.4%로 반에도 미치는

30) 오즈비(odd ratio)가 1인 경우 종속변수의 분자와 분모의 확률 값이 동일하여 독립변수 증감에 따른 퇴출형태간의 우월을 평가할 수 없다.

못한다는 것을 나타났다. $\frac{\pi_2}{\pi_1}$(M&A 퇴출 대 자발적 퇴출)는 1.453으로 Ln(자산)이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M&A 가능성은 자발적 퇴출 가능성에 비해 45.3%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frac{\pi_3}{\pi_1}$(비자발적 퇴출 대 자발적 퇴출)은 0.528, $\frac{\pi_3}{\pi_2}$(비자발적 퇴출 대 M&A 퇴출)은 0.363으로 보험회사 규모의 증가에 따라 비자발적 퇴출의 가능성은 다른 퇴출형태의 가능성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기간중 비자발적 퇴출사의 규모가 다른 퇴출 형태를 취한 보험회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결과는 비자발적으로 퇴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라는 타 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Kim, 1995; Barniv and Hathorn, 1997).

LN(자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퇴출형태간의 조합 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IRIS2였다(앞에 나오는 모수 추정 결과 참조).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대리한 IRIS2는 순보험료를 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잉여금 대비 보험회사가 인수한 리스크 수준, 레버리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IRIS2가 클수록 순보험료 대비 계약자 잉여금 비율이 낮아져 보험회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선행 문헌에서 논의된 AM Best사의 파산원인인 준비금 부족, 과도한 성장 등과도 동일한 결론, 즉 '안정성(준비금 부족, 과도한 성장)이 저하되면 자발적 퇴출이나 비자발적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본 분석에서는 안정성이 강화되면 다른 퇴출형태에 비하여 M&A 퇴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매수회사 입장에서 안정성이 높은 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만 IRIS2의 경우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오즈비에 미치는 영향은 Ln(자산)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표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frac{\pi_1}{\pi_0}$는 1.005로 IRIS2가 한단위 증가할 때 자발적 퇴출 가능성은 시장 존속 가능성에 비하여 5%정도 증가한다. $\frac{\pi_2}{\pi_1}$는 0.982로 IRIS2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M&A 퇴출 가능성은 자발적 퇴출 가능성에 비해 약 1.8% 떨어진다. 즉 보험회사의 안정성이 하락할수록 M&A 보다는 자발적 퇴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리고 $\frac{\pi_3}{\pi_2}$은 1.015로 IRIS2의 한 단위 증가에 대하여 비자발적 퇴출 가능성은 M&A 퇴출 가능성보다 1.5% 증가한다. 이는 보험회사의 안정성(순보험료 대비 계약자 잉여금 비율)이 떨어질수록 M&A 보다는 비자발적 퇴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익성의 지표인 ROA(순수입/자산)는 6가지 서로 다른 종속변수 모형에서 3가지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rac{\pi_1}{\pi_0}$은 1.180이며 $\frac{\pi_3}{\pi_0}$은 1.138로 ROA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자발적 퇴출 가능성과 비자발적 퇴출 가능성은 시장 존속 가능성보다 각각 18%와 13.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퇴출 보험회사는 정상 보험회사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일부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첫째 본 분석의 전체 기간은 6년이지만 개별 보험회사 분석시 사용 자료는 퇴출 1년전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과 이순재와 김재현(2003)에서 지적하였듯이 퇴출에 임박한 회사들이 고위험-고수익의 영업패턴으로 단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의 대리변수인 IRIS3(순보험료의 변화)은 개별 식에서 퇴출형태간의 차별화를 하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V. 퇴출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보험시장 퇴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먼저 III장에서는 1990년대 말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다수 퇴출한 원인을 제도적 측면과 함께 계량적 분석 및 비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는 미국 손해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해서 퇴출형태와 보험회사 특성과의 관계를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분석 결과

1990년대말 생명보험회사 대량 퇴출의 징후는 1980년대말 신규 생명보험회사를 허가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생명보험회사의 허가 기준에 신규 생명보험회사의 생존력을 결정하는 출자능력 등 미시적 기준보다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완화나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와 같은 국가의 거시적 목표 달성 기준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를 일시에 허가했다면 신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 규제(ex-post regulation)가 있었어야 했었다. 시장개방 후 신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실재자산비율)은 사업개시 3년이 지나면서 생존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악화되었지만, 정부의 대응, 즉 지급여력 규제는 느슨했고 시기적으로 한 박자 늦어서 시장에 실질적인 신호효과를 줄 수 없었다.

퇴출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문제의 발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퇴출한 신규 생명보험회사와 생존한 신규 생명보험회사간의 실재자산비율을 생보시장 진입시점부터 퇴출시점까지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퇴출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진입 시점부터 생존 생명보험회사보다 실재자산비율이 낮았지만 T검정 결과 유의한 시점은 시장진입 3년차부터였다. 이 시점부터 시장에서 퇴출할 때까지 퇴출 생명보험회사의 실재자산비율은 생존 생명보험회사보다 매우 현저하게 낮았는데, 이는 정부가 이 시점부터 부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 분석의 다른 중요한 부분은 질적(비계량적) 분석이다. 질적 분석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소유구조와 퇴출여부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기업의 재정상태가 부실한 생명보험회사는 전부 퇴출하였고, 모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예: 30대 대기업집단 소속)에는 대부분 생존하였지만 모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대부분 퇴출하였다.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생존과 퇴출에서'모기업의 증자능력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결론과 함께 금융기관인 생명보험회사의 진퇴가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생명보험 정책과 감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 미국 보험회사 퇴출분석 결과

보고서의 IV장에서는 먼저 미국 보험회사 퇴출 규제의 기본구조와 현황을 논하였다. 먼저 미국 보험회사 퇴출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기준은 RBC 제도지만, 부실 보험회사를 분석·조사하는 제도의 골격은 FAST(Financial Analysis and Solvency Tracking)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ST 시스템은 계산방식이 공개되는 IRIS 시스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Scoring System 및 보험회사 프로필시스템(Insurer Profile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IRIS 시스템과 FAST Scoring 시스템은 재무비율분석이 중심이며 보험회사 프로필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FAST 시스템을 통해 각 주의 특

정 보험회사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지될 때는 NAIC가 중복해서 감독하는 Peer Review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보험회사 퇴출형태를 자발적 퇴출, M&A퇴출, 비자발적 퇴출 및 시장 존속(정상회사)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 퇴출형태와 보험회사 각종 특성과의 관련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보험회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재무특성(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변동성), 영업특성(자산규모, 영업효율, 영업특성), 조직특성 및 환경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대리변수는 기존 연구와 연구자의 직관으로 추출하였다. 유의한 독립변수와 최적 모형을 찾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실증분석은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stic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자산규모 대리변수 Ln(자산), 안정성 대리변수 IRIS2, 변동성 대리변수 IRIS3 및 수익성 대리변수 ROA가 선별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자산규모는 퇴출형태와 밀접하면서도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시장 존속사와 M&A 퇴출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안정성지표인 IRIS2(순보험료 대비 계약자잉여금)도 모든 조합의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퇴출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산규모에 비하여 IRIS2는 독립변수의 증감에 따른 오즈비의 변화율은 미미하였다. 셋째, 수익성 지표인 ROA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랐다. 즉 ROA의 증가가 미미하지만 시장존속보다는 자발적 퇴출 및 비자발적 퇴출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실해진 보험회사가'고위험-고수익'경영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 퇴출 관련 제도 개선의 시사점

1990년대말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퇴출형태는 대부분 공적자금이 대거 투여된 비자발적 퇴출이었지만, 비슷한 기간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 형태는 공적자금(또는 보험보증기금) 투여가 필요 없는 자발적 퇴출이나 M&A 퇴출이 대부분이었다. 보고서 IV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손보시장에서 퇴출한 114개 보험회사중 자발적 퇴출사는 59개, M&A 퇴출사는 20개이며 비자발적 퇴출사는 35개였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보험시장 퇴출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보험회사의 퇴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보험회사 퇴출로 야기되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제도는 원론적으로 공적자금 투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부실 보험회사를 적기에 퇴출시켜 공적자금 투여를 최소화하는 것과 문제의 보험회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퇴출 관련 제도 개선의 시사점과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가. 지급여력제도 관련 개선 방향

공적자금 소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보험회사의 퇴출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적기'라 함은 보험회사가 퇴출될 당시 순자산액이 최소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의 III장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과거 실재 순자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은 영업을 지속하여 왔다. 지급여력제도가 도

입된 이유는 평가 시점에서 부채를 충당할 자산 외에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본력, 즉 지급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과거의 사례에서 지급여력비율이 플러스인 보험회사도 자산부채 실사 결과 대부분 수백억원 이상 순자산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의 주된 이유로는 자산의 과대계상(또는 부채의 과소계상)과 같은 고의적인 이유 외에 미실현 이익의 지급여력에 계상, 청산가격과 장부가격과의 차이 등 회계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감독당국도 지급여력제도가 '지급여력'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여력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급여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 한 듯하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현행 지급여력금액 계산시 기준을 파산시 '여력'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항목만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급여력 제도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대응방안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비자발적 퇴출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출 및 M&A 등 모든 퇴출 방식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IV장 미국 보험회사의 분석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재무정보(자산규모, 안정성, 수익성, 변동성)는 퇴출여부 뿐만 아니라 퇴출형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장부가치가 실재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면 자산규모는 의미있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시가평가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있다.[32]

---

31) 예를 들면 보험선임계리사 제도의 개선 및 이연상각 차를 지급여력금액에서 차감하고 후순위채와 금융재보험의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32) 영국 FSA는 2004년 12월말부터 재무건전성 감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자산부채의 시가평가이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법이나 감독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선임계리사 제도 등을 통해서 보험회사 부채 평가에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임계리사가 소속한 회사의 부채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보험회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에는 자산부채실사가 부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일반 보험회사에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것이다.[33] 자산부채실사를 현 제도처럼 부실보험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실사와 정상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중 일정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부문'실사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상시부문' 자산부채 실사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고(예: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책임준비금 등) 각 항목에 대해서 부문실사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사대상 보험회사와 검사대상 항목의 선정 및 자산부채'상시부문' 검사 방법은 감독당국의 검사인력 및 실사 대상 항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시부문'자산부채 실사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처럼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보험회사에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시부문' 자산부채실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면 감독기관이 이를 기초로 '부문' 자산부채실사 대상 회사와 항목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33) 현재 자산·부채 실사는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업자의 결정을 위한 것임

나. 적기시정조치 관련 개선 방향

적기시정조치는 보험회사 퇴출 당시의 순자산이 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근간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금산법에 의하면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내의 영업정지 및 영업의 인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금산법제14조). 여기서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경영상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감위(또는 예금보험위)가 결정한 금융기관이다. 위에 언급된 규정을 보면 보험회사는 두 가지 요건(순자산액이 플러스이고,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율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정상'보험회사로 인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처리한 사례를 보면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율 이상이지만 순자산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는 듯하다. 즉 부실 생명보험회사 지정 조건중 순자산액이 마이너스라는 기준보다는 사실상 지급여력 기준만을 적용하다보니 감독기관의 개입시점이 늦어지고 부실보험회사의 순자산액 부족액도 더욱 증가하여 공적자금 투입액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금산법에 의한 순자산규제의 적용을 활성화 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순자산액 계산이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평가당시의 자산부채실사 결과일 것이므로 실사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감독기관에 의한 자산실사는 시장에 영향을 주어 해당 보험회사의 영업 등이 크게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부채실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기시정조치의 두 번째 문제는 지급여력비율이 정해진 기준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발동된다는 점이다. 자동발동 방식은 감독자의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발동조치가 지급여력이라

는 하나의 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적기시정조치가 처음 도입된 미국의 경우 수 천개의 금융기관이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감독당국에 의한 '밀착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공식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자동적인 발동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의 수는 50여개로 공식에 의한 감독 외에 상시밀착 감시감독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계량화가 어려운 경영관리 및 지배구조 리스크는 계량적 지표보다는 상시밀착 감시를 통한 감독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볼ㄹ 수 있다. 비계량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보험회사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은 공식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 아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자동발동 방식 외에 비계량적 경영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적기시정조치 제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 생명보험회사 소유 및 지배구조 감독 개선방향

본 보고서의 퇴출 생명보험회사 소유구조 분석은 '모기업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면서 견실한 생명보험회사는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사실은 보험회사는 은행과는 달리 소유지분에 대한 한도가 없어 산업자본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고 따라서 부침이 심한 산업자본 모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생존과 퇴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문제는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기관중 장기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다는 점, 정보비대칭 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기구가 없다는 점[34] 그리고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현재 비공개(비상장)란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34) 감독기관은 시장의 심판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는 아니다.

물론 감독기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제도적 보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35]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보완으로 생명보험회사와 모기업간의 관계가 충분히 투명해지고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첫째, 각종 제도의 운영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내부통제의 주축이 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등이 아직도 대주주의 영향 하에 선출되고 그 결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모기업의 대주주 등이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 밖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보험회사 자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대변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진과 주주의 의사결정을 감시할 기구가 여전히 없다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계약자와 주주(또는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발생하는데 소액주주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이나 정관상 주주의 권리 등을 근거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심각한 제도상의 공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생명보험회사처럼 계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계약자위원회'를 보험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축소 등을 통해서 아직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완화 되어 있는 대주주와의 거래관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여 생명보험회사의 모기업(대주주) 리스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라. 부실 감시 및 조기경보 제도 개선 방향

본 보고서의 IV장 미국 보험회사 퇴출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 의사결정은 주 정부에서 RBC규제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35) 예를 들면, 2000년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과 2003년 대주주에 대한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규정 도입,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공시의무화 및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만, 퇴출 가능성이 있는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분석·조사 골격은 FAST 시스템이다. FAST 시스템은 재무분석이 중심이 되는 IRIS 비율과 FAST Scoring System 그리고 보험회사 프로필시스템(Insurer Profile System)으로 구성된다.

RBC는 자기자본 규제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 의사결정의 지표로 사용되지만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나아가 실증 연구(예: Grace외, 1998; Cummins외, 1995)에 의하면 RBC비율이 부실 보험회사를 예측하는 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FAST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실가능 보험회사를 선별과정하고, 문제 보험회사를 해당 주 보험감독청에 조기경보하고 있다.

미국의 RBC제도와 FAST 시스템 운영이 우리나라 보험감독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향후 도입되는 RBC제도(자기자본규제)는 퇴출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활용하고, 부실보험회사 감시나 조기경보 등은 현재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조기경보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6]

그리고 미국의 경우 수 천개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전히 IRIS 비율분석 및 FAST Score 산출과 같은 계량적인 분석에만 의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 보험회사가 수십 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질적 분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또는 해당 회사의 독특한 경영리스크 등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독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본다.

---

36) 현재 경영실태평가시 재무비율은 부문별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등급산정을 위하여 이용되며 이 중 계량평가는 매분기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자료로 사용됨.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 척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조기경보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형의 개발과 검증 등이 필요할 것임.

< 참고 문헌 >

강동수, 「적시시정조치의 개선방향」, 세미나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4.

금융감독원, 「국내 부실보험회사의 특성 분석」, 2003.

_____, 「보험리스크 측정에 관한 모범규준」, 2004.11(a).

_____, 「보험회사 감독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추진」,『금융감독정보』제2004-42호, 2004.11(b).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년 공적자금관리백서」2003.

김용우, 보험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노상봉・홍범식, 『보험업법 축조해설』1995년, 매일경제신문사

류건식・천일영・ 신동현, 『생명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2-5호, 보험개발원, 2002.10.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50년사」2000.

_____, 생명보험회사료」3권, 1992.

_____, 「생명보험회사료」4권, 1992.

신동현, 「유럽 보험회사의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Insurance Business Report 제17호, 보험개발원, 2003.

우춘식・김광용・강성범, 「Logit 분석과 AHP 분석을 이용한 부도예측모형의 비교연구」,『재무관리연구』, 제14권, 1997, pp.229~252.

이기형・나우성・김해식,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2005.

이순재・김재현,「생명보험회사의 파산원인 연구: 한국과 일본」,『보험학회지』,제64집, 2005, pp. 21~51.

정중영 「손해보험의 지급여력개선-RBC 제도를 중심으로」,『보험학회지』, 제67집, 2004.

천일영・주민정・신동현,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보험개발원, 2003.

Akhigbe, Aigbe and Jeff Madura, "Intra-Industry Signals Resulting from Insurance Company Merger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8 ,2001, pp.489~506.

Altman, E. I.,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Vol.23, 1968, pp.589~609.

AM Best, "Best's Insolvency Study, US Life/Health Insurers1971 to 2001", 2003.

_____, Insolvency Study, Property/C US Insurers, 1969 to 2002" 2004.

_____, "Best's Insolvency Study, US Life/Health Insurers1976 to 2002", 2005.

Ambrose, J. M. and J. A. Seward, 1988, "Best's Ratings, Financial Ratios and Prior Probabilities in Insolvency Predic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5, 1988, pp.229~244.

Bain, J.,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BarNiv, Ran and B. McDonald, "Identifying Financial Distress in the Insurance Industry: A Synthesis of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Issu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9, 1992, pp.543~574.

BarNiv, Ran and John Hathorn, "The Merger or Insolvency Alternative in th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4, 1997, pp.89~113.

BarNiv, Ran and Michael L. Smith, "Underwriting Investment and Solvency",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5, 1987, pp. 409~428.

BarNiv, Ran and Robert A. Hershbarger, "Classifying Financial Distres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7, 1990, pp.110~136.

Baumol, W., J. Panzar, and R. Willig,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New York, 1982.

Bernheim, D., "Stretegic Entry Deterrence of Sequential Entry into an Industry"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15, 1984, pp.1~11.

Borooah, Vani K., *Logit and Probit Ordered and Multinomial Models*, SAGE Publications, 2001.

Brown, Mark J., Carson, James M. and Robert E. Hoyt, "Economic and Market Predictors of Insolvencies in the Life-Health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6, 1999, pp.643~659.

California Conservation and Liquidation Office (CLO) ,http://www.caclo.org.

Carson, James M. and Robert E. Hoyt, "Evaluating the Risk of Life Insurer Insolvency: Implications from the US for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Multi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Vol.10, 2000, pp.297~314.

Cheong, Inbum and Harold D. Skipper, "A Multivariate Statistical Approach to Life Insurer Insolvency Prediction" Research scheme presented at the ARIA meeting, 1988.

Cooley, Philip, "Baysian and Cost Considerations for Optimal Classification with Discriminant Analysi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42, 1975, pp.277~287.

Cummins, D., S. Harrington, and R. Klein, "Insolvency Experience, Risk-Based Capital, and Prompt Corrective Action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19, 1995, pp.511~527.

Deily, Mary E., "Exit strategies and plant-closing decisions: the case of steel",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22, 1991, pp.250~271.

Dunne, Timothy, Mark Roberts and Larry Samuelson, "Patterns of firm entry and exit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19, 1988, pp.495-516.

Eaton, B. C., and R. G. Lipsey, "Exit Barriers are Entry Barriers: The Durability of Capital as a Barriers to Entry",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12, 1980, pp.721-729.

FSA, Interim Prudential sourcebook for insurers, HTTP://www.fsa.gov.uk, 2005.

Grace, M., R. Klein and S. Harrington, "Risk Based Capital and Solvency Screening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5, June 1998, pp.213~244.

Grebenar, Tennyson, "Voluntary Liquidation: A Viable Alternative for Struggling Banks" Texas Banking 81, 1992, 25-26.

Greene, W. H., *Econometric Analysis 2n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3.

Hall, Brian, "Regulatory Free Cash Flow and the High Cost of Insurance Company Failur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7, 2000, pp.415~438.

Hammond, J. D. and N. Shilling, "Some Relationships of Portfolio Theory to the Regulation of Insurer Solidit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45, 1978, pp.377~400.

Harrington, Scott E. and Jack M. Nelson, "A Regression-based Methodology for Solvency Surveillance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3, 1986, pp.583~605.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IAA), *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 A Report by the Insurer Solvency Assessment Working Party of the IAA*, 200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 2003.

_____, *Cornerstones for the Formulation of Regulatory Financial Requirements*, 2005.

Jensen, M., and Mecking, W. E., "Theory of the Firm: Managerail Behavior Agecn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3, 1976, pp.305-360.

Kahane, Yehuda, "Solidity, Leverage and Regulation of Insurance Companies",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14, 1978, pp.3~19.

Kahane, Yehuda, Charles S. Tapiero, and Laurent Jacque, "Concepts and Trends in the Study of Insurer's Solvency",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surance Solvency*, Wharton School, Philadelphia, 1986.

Karakaya, F., "Market Exit and Barriers to Exit: Theory and Practice" *Psychology & Marketing,* Vol.17, 2000, pp.651~668.

Kim, Hunsoo, Jean Kwon & Soon-jae Lee, " Choice of Exit Forms and Firm Characteristics: Evidence from the U.S. Property-Liability Insurance Market", *The Proceeding of 1st World Risk, Insurance and Economics Congress*, 2005.

Kim, H., "Ex Post Efficiency Gains of Insurance Company Mergers"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1995.

Kongsted, Hans Christian, "Entry and exit decisions under uncertainty: The limiting deterministic case", *Economic Letters*, Vol.51, 1996, pp.77~82.

Kwon, W. Jean, H. Kim and S. Lee, "Can Insurance Firms Easily Exit from the Market", *The Geneva Papers*, Vol.30, pp.268~284, 2005.

Lee, Soon-Jae, David Mayers and Clifford W. Smith, Jr., "Guaranty funds and risk-taking: Evidence from th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44, 1997, pp.3~24.

London Working Group, "Prudential Supervisory of Insurance Undertaking", London Working Group of EU Insurance Supervisory Conference, 2002.

Maddala, G. S.,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Mathewson, J., and J. Stiglitz, New Development in the Analysis of Marke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1986.

Matthyssens, Paul and Pieter Pauwels, "Uncovering International market-Exit Processes: A Comparative Case Study", Psychology & Marketing, Vol.17, 2000, PP.697~719.

Mayers, David and Clifford W. Smith, Jr., "Ownership Structure Across Line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31, 1988, pp.351~78.

Mayers, David and Smith, C. W., "Ownership Structure across Lines of Property and Casual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1, 1988.

NAIC, A Comparison of the Insurance and Banking Frameworks for

Identifying and Supervising Companies in Weakened Financial Condition, 2005.

_____, "Life RBC Industry Results for 2001", Research Quarterly Winter, 2002.

____, "Property & Casualty RBC Industry Results for 2001", Winter, 2002.

____, "2001 Health RBC Industry Results", Research Quarterly, Winter, 2002.

PA Insurance Department, Insurance Company Rehabilitation and Liquidation, http://www.insurance.state.pa.us/html/iliq.html.

Paech, Niko P., "Contestability reconsidered: The meaning of market exit cos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34, 1998.

Resnick, L., "Making the Tough Decison: *Hold or Fold*" *National Underwriter*, Vol.102, 1998.

Schary, Martha A., "*The Probability of Exit*",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22, 2, 1991.

Skipper Jr, H., *International Insurance*, 1997, Prentice Hall.

Trieschmann, James S. and George E. Pinches, "A Multivariate Model for Predicting Financially Distressed P-L Insurer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0., pp.1973.

Venezian, Emilio C., "Risk, Return and Rate Regulation in the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0*, 1983.

< 부 록 >

부록 1 : 신설 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37)]

1. 외국생명보험회사업자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가. 허가 신청자격

①원칙적으로 본국 안에서 전국적인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최근 3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 및 자산규모가 기존 국내생명보험회사의 당해 년도별 평균 수입보험료 및 평균자산규모의 2분의 1이상인자
③최근 3사업년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하고, 본국의 정부 또는 보험감독기관에서 당해기간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고 판정 받은 자
④최근 5년동안 생명보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⑤본국의 정부 또는 정부의 출자 및 출연을 받은 자로부터 자본금의 출자 또는 기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자

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사항

①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허가 당시의 국내보험시장 상황등을 감안하여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함
- 허가신청자격 유무
- 허가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타당성
- 허가신청자가 계획하고 있는 영업활동이 국내 보험시장의 안정

37) 생명보험회사료(1992)에서 재인용, 재무부 보존 자료 및 보도자료.

유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한민국 보험산업과의 유대관계 및 향후 대한민국 보험산업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다. 영업기금

①대한민국 안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생명보험회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기금은 20억원 이상임
②영업기금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국통화를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원화자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본국통화로 예탁하여야 함
③본국통화로 예탁한 영업기금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탁자금의 인출 또는 예탁금융기관의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2.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 허가기준

가. 주주의 자격

①내국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함
- 최근 1년간 금융기관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5위 이내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재무부장관이 사회통념상 당해 계열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및 그 계열주가 아닌 자. 다만, 위 기준에 의한 16위에서 30위까지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인 경우에는 당해 합작생명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액의 50/100 미만을 소유할 수 있음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와 그 계열법인이 아닌 자. 다만,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최근 3년동안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부실기업정리대상법인(산업합리화대상) 및 그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 위의 계열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②외국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함

- 본국 안에서 생명보험회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10년 이상 생명보험회사업을 영위하여오고 있는 자. 다만, 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합작법인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가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작회사에 참여하는 외국주주의 자격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함
- 최근 3사업년도의 당해법인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규모가 기존 국내 6개 생명보험회사의 당해연도별 평균 수입보험료 및 평잔 자산규모의 1/2 이상인 자
- 외국보험회사업자가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최근 3사업년도 동안 주주배당을 실시하였어야하고 외국보험회사업자가 상호회사일 경우에는 최근 3사업년도 동안 계약자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하며, 양자 모두 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미국보험회사업자의 경우 최근 3사업년도 동안의 영업실적도 보험감독관협회가 정하는 지표에 의거 고려될 것임)
- 최근 5년 동안 보험회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벌금 및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았거나 임원이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해임된 사실이 없는 자

- 본국의 정부 또는 정부의 출자 및 출연을 받은 자로부터 자본금의 출자 또는 기금을 납입 받지 아니한 자.

나. 자본금과 예탁금

①납입자본금

-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생명보험회사 : 6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
- 지방에 본사를 두는 생명보험회사 : 5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

②자본금의 일부 예탁

- 납입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해야 함

다. 외국인 지분비율

①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한도

-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9%이상이어야 함
- 본점소재지가 지방일 경우 제한이 없음
- 다만, 16위에서 30위까지의 대규모 기업집단과 합작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의 위치에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

라. 허가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①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국내보험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호혜주의원칙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함
-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이 기준에 의한 "주주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가신청서의 사업계획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보험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전국규모 순수내국생명보험회사 신설 허가기준

가. 주주의 자격

①개인(자연인)이 출자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함
-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여신관리대상기업군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5위이내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계열주
- 최근 3년동안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위의 계열주 또는 기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금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은행업, 증권업, 손해보험업,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감독기관(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및 보험공사)으로부터 금융기관 건전경영 평가기준에 의거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함. 다만, 금융전업기관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계열 전체 또는 계열에 속하는 모든 개별법인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한 지도비율(또는 업종별 지도비율)이상이어야 함

③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당해기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별표2에 의하되 당해기업이 신설되는 생명보험회사에 출자하려는 금액을 차감한다)이 은행감독원장이 설정한 업종별 지도비율이상인 기업에 한함. 다만,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 전체 또는 계열에 속하는 모든 개별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설정한 지도비율(또는 업종별 지도비율)이상이어야 함
- 위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 경우에도 주주자격 중 출자자격이 제한되는 개인이 당해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인 기업은 주주자격이 없음. 다만, 개인이 계열주인 기업으로서 그 계열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와 그 계열에 속하는 모든 기업이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총수가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자본금과 예탁금

①납입자본금

- 설립지역에 관계없이 100억원 이상
- 자본금은 모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함

②자본금의 일부예탁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해야 함

다. 설립허가시의 우선순위

①허가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의 “가” 내지 “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의 보험회사를 허가함

②기업의 상호출자 등에 의한 경제력집중방지를 위하여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를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보다 우선하여 허가함

③개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업의 전업화 유도 및 금융업 참여의 기회 균등화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최우선하여 허가함

- 중소기업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당해 계열에 속하는 비금융기업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업에 전업화 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 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금융업에 전업화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보험회사업허가 이후 계속하여 금융업에 전업하는 조건이어야 함)

④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지역포함)을 제외한 지방에 본점을 두는 회사를 우선하여 허가함

⑤기타 주주의 출자능력 및 건전성과 기업의 집중도등을 고려하여 허가함

라. 허가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및 허가절차

①허가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수의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내허가 함

- 허가신청서 첨부서루를 누락 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이 기준에 의한 “주주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 및 해당자금 출처의 정당성 여부
- 당해회사의 사업계획이 보험산업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내허가를 받은 자는 내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자본금 납입 등 영업 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 한 후 본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③본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실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업을 허가 함

마. 허가신청시의 유의사항

①금융업에 전업화 하려는 개인 및 금융기관의 출자자는 향후 2년내에 현재 영위중인 비금융 업종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금융전업화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주거래은행장 및 은행감독원장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함

②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주 또는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당해기업 또는 계열전체이거나 계열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한 자기비율 지도비율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허가신청해야 함,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또는 보험공사 사장으로부터 건전경영 평가기준에 의한 건전경영 평가를 받아 허가신청해야 함

③이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가 주주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금융전업화 추진계획등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이전등의 제재조치를 함

바. 세부 허가 기준

①'88. 5월 정부가 발표한 허가우선순위 지침을 토대로 하고, 보험심

의위원회 및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의 토의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허가대상자 선정방법을 마련하였음

②적정 허가회사 수

- 5~8개사의 허가가 거론되었으나, 합작생명보험회사 수준인 5~6개사가 위원회의 다수의견
- 이에 따라 내허가된 합작생명보험회사 수 수준인 6개사를 허가하기로 함. (한국, 신한, 동일, 대신, 한덕, 태평양)

③허가업체 선정 방법

- 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신청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종 허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종합평가 점수를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었음
- 이에 따라 허가 대상자 선정의 명료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부여에 의한 종합평가점수로 허가 대상자를 선정함

④평가항목과 가중치

항 목	가 중 치
금 융 전 업	20%
개 인 출 자	16%
지 방 본 사	16%
출 자 능 력	16%
경 영 능 력	16%
출자의 건전성	16%
6개 항목	100%

⑤각 항목별 점수배정방법

- 원칙적으로 허가신청자를 3등급(상, 중, 하)르로 구분하고, 점수배정은 3 : 2 : 1로 함
- 다만, 3등급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지방본사와 개인출자의 경우는 2등급(상,중)으로 구분하고 점수는 3 : 2로 배정함

⑥내허가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가점수 순위별로 우선순위1~6위 회사를 내허가함
- 내허가 받은 자가 당부가 '85. 5월에 발표한 허가기준상의 주주의 자격기준에 결격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내허가 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주주자격 결격자

· 15대 재벌의 계열주(16~30대 재벌은 50%미만 만출자 허용)
·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 최근 3년동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자
· 위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자(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서 규정)에 있는 자

⑦금융전업 항목 평가기준

-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보험회사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갖춘 유수한 금융기업집단이므로 신설 보험회사는 이들 외국보험회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내국보험회사 신설 허가를 할 때에 금융업경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신청자를 평가시 우대하는 것이 국내보험시장 발전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임
- 허가신청한 생명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그 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열법인을 포함함. 이하 "대주주"라 함)가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상등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만을 경영하는 경우
· 중등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 하등급: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 다만,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만을 경영하는 경우에 포함함.

·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을 처분하고 금융업에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설립 허가기준에서 요구하는 금융전업화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일체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⑧개인출자 항목 평가기준

- 개인이 출자하는 것을 법인이 출자하는 것보다 평가시 우대하는 것은 기업이 상호출자를 통하여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과 부실화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개인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설립에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

⑨지방본사 항목 평가기준

- 지방 본사소재를 평가시 우대하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금융자산의 지역간 균형배분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신청회사의 본사가 서울인지, 지방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⑩출자능력 항목 평가기준

- 보험회사가 설립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규모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상당규모의 자본증액이 요구되므로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안정과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이 필수적임
- 따라서 출자주주의 자본조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출자주주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재산세(과거의 부의 축적정도) 및 소득세(현재의 소득수준) 납세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채택하였

음

- 허가신청회사간의 출자능력 비교는 51%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주주(주주 1인이 51%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1%를 출자한 상위지분의 주주집단)의 최근 1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납세실적을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법규상 규정된 타법인에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 하려는 “한양생명”과 지방생명보험회사로 허가 할 계획인 “충북생명”을 제외한 15개사를 기준으로 함)

· 상등급: 1~5위
· 중등급: 6~10위
· 하등급: 11~15위

⑪경영능력 항목 평가기준

- 보험회사가 설립 후 효율적인 경영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신설 보험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대주주들의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금융업 종사경력을 평가기준으로 함
-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 증권, 보험, 단자, 종금등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상등급: 대주주(1인인 경우 당해인, 다수인 경우 과반수이상)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중등급: 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1인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하등급: 대주주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⑫출자 건전성 항목 평가기준

- 보험회사가 설립 후에 건전하게 경영을 영위하는지 여부 및 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당해 보험회사에 출자할 대주주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종 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시장기반과 건실한 경영내

용 및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경영 내용이 동종업계 내에서 우수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
· 상등급: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모두 동업종평균이상이고 배당을 한 경우
· 중등급: 상기 3지표 중 2개가 충족되는 경우
· 하등급: 상기 3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비금융기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주력기업(매출액기준)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내에서 양호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
· 상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경우
· 중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 이하인 경우
· 하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출자자금을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는 하등급으로 분류함

4.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설립 허가기준

가. 주주의 자격

①신설될 지방생명보험회사의 내국인 주주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여신관리 대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재무부장관이 사회통념상 당해 계열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및 그 계열주가 아닌 자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와 그 계열법인이 아닌 자. 다만,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전업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최근 3년 동안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부실기업정리 대상법인(산업합리화대상) 및 그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 위의 계열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자본금과 예탁금

①납입자본금
-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
- 자본금 납입은 모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함

②자본금중 일부 예탁
- 납입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하여 국내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함

다. 설립지역(본점 소재지) 및 발기인 대표

①본점소재지: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②발기인대표: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지역 상공회의소회장

라.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재산운용

①지방생명보험회사의 재산운용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 중심으로 운용해야 함

마. 허가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①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국내보험시

장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이 기준에 의한 “주주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가신청서의 사업계획이 보험산업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보험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부록 2 : 국내 생명보험회사 진입 퇴출 연혁

1921	설립	1950	상호변경	1962	면허취소										
	조선생명		한국생명												
1946	설립	1964	계약인수	1969	대주주변경	1999	대주주변경	1999	계약인수	2001	계약인수	2004	대주주변경		
	대한생명		협동생명		신동아그룹		국영사		두원생명		현대,삼신생명		한화그룹		
1947	설립	1961	관리명령	1964	면허취소	1964	계약이전								
	협동생명		동방생명				대한,동방,대한교육								
1947	설립	1962	흡수합병	1971	대주주변경	1973	면허취소	1973	계약이전						
	고려생명		동아생명		화창실업				동해생명						
1950	설립	1973	대주주변경	1998	계약인수										
	흥국생명		태광그룹		태양생명										
1954	설립	1960	공동관리	1963	공동관리해제	1973	대주주변경	1998	계약인수	1999	대주주변경	2000	상호변경	2002	상호변경
	제일생명		대한생명 동방생명 고려생명				조양상선그룹		고려생명		알리안츠		알리안츠제일생명		알라안츠생명
1957	설립	1963	대주주변경	1964	계약인수	1989	상호변경	1998	계약인수						
	동방생명		삼성그룹		협동생명		삼성생명		국제생명						
1958	설립	1958	상호변경	1964	계약인수	1991	계약인수	1995	상호변경	1998	계약인수				
	태양생명		대한교육보험		협동생명		AFLAC		교보생명		BYC생명				
1959	설립	1962	피흡수합병												
	동아생명		고려생명												
1973	설립	1973	계약인수	1980	대주주변경	1983	대주주변경	1983	상호변경	2000	피흡수합병				
	동해생명		고려생명		공영토건		동아그룹		동아생명		금호생명				
1987	외국지사설립	2004	현지법인전환												
	LINA생명		라이나생명												
1987	외국지사설립	1997	허가취소	1997	계약이전										
	ALICO생명				아메리카생명										
1988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2000	대주주변경	2000	상호변경								
	부산생명		한성생명		LG그룹		럭키생명								
1988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1997	대주주변경	1997	상호변경	2000	흡수합병						
	대전생명		중앙생명		SK그룹		SK생명		국민,한덕생명						
1988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2000	피흡수합병										
	대구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										
1988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1996	대주주변경	1996	상호변경	2000	흡수합병						
	광주생명		아주생명		금호그룹		금호생명		동아생명						
1988	외국지사설립	1991	허가취소	1991	계약이전										
	AFLAC생명				대한교육보험										
1988	외국지점설립	1992	허가취소	1992	계약이전										
	Georgia생명				네덜란드생명										
1989	합작사설립	1995	합작변경	1995	상호변경										
	동부에트나생명		프랑스 AXA		동부생명										
1989	합작사설립	1995	상호변경	1999	합작지분인수	2000	흡수합병								
	동양메테피트생명		동양생명		동양그룹		태평양생명								
1989	합작사설립	1998	지분인수	1998	상호변경										
	코오롱메트생명		미.메트로폴리탄		메트라이프생명										
1989	외국사설립	1997	상호변경												
	한국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												
1989	전국사설립	2003	대주주변경	2003	상호변경										

	대신생명		녹십자그룹		녹십자생명										
1989	합작사설립	1990	합작변경	1995	상호변경	1998	허가취소	1998	계약이전						
	고려CM생명		영국 CM		고려생명				제일생명						
1989	전국사설립	2000	피흡수합병												
	태평양생명		동양생명												
1989	합작사설립	2001	허가취소	2001	계약이전										
	삼신올스테이트생명				대한생명										
1989	전국사설립	2000	피흡수합병												
	국민생명		SK생명												
1989	전국사설립	2000	피흡수합병												
	한덕생명		SK생명												
1989	전국사설립	2000	대주주변경	2000	상호변경	2000	흡수합병	2001	허가취소	2001	계약이전				
	한국생명		현대그룹		현대생명		조선생명				대한생명				
1990	전국사설립														
	신한생명														
1990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1998	허가취소	1998	계약이전								
	중부생명		국제생명				삼성생명								
1990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1996	대주주변경	1996	상호변경	1999	허가취소	1999	계약이전				
	경남생명		대일생명		두원그룹		두원생명				대한생명				
1990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1996	상호변경	1998	허가취소	1998	계약이전						
	전북생명		한신생명		BYC생명				교보생명						
1990	합작사설립	1999	지분인수	1999	상호변경	2001	대주주변경	2002	상호변경						
	영풍메뉴라이프생명		영풍그룹		영풍생명		영국 푸르덴셜		PCA생명						
1990	지방사설립	1993	상호변경	1998	허가취소	1998	계약이전								
	충북생명		태양생명				흥국생명								
1991	외국사설립	1991	계약인수	1999	상호변경										
	네덜란드생명		Georgia생명		ING생명										
1991	외국사설립	1992	상호변경	2003	대주주변경	2003	상호변경								
	AGF생명		프랑스생명		하나금융지주		하나생명								
1992	합작사설립	1999	상호변경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												
1993	지방사설립														
	한일생명														
1997	외국지사설립	1997	계약인수	2000	상호변경										
	아메리카생명		ALICO생명		AIG생명										
2001	외국지점설립														
	카디프생명														
2002	전문사설립														
	SH&C생명														
	신한금융지주,카디프생명														
2004	전문사설립														
	KB생명														
	국민은행														

부록 3 : 보험회사 시장 퇴출에 관련된 법규

1. 보험업법상 관련 조항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⑤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보험업법시행령상 관련 조항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②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수 있다.

제66조(재무건전성평가의 실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보험업감독규정상 관련 조항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②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2절 재무건전성 평가

제7-14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평가등급의 설정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5조(위험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험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금감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

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금감위는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2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감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업의 전부정지
2. 보험업 허가의 취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완화·면제) ①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6.15.>

②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관련 조항

제5-4조(자산·부채의 평가대상) 감독규정 제7-4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제5-5조(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7-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검사 등을 통하여 별표 10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과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경영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는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2와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10에서 정하는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계량평가항목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제5-6조관련)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 지급여력 비율Ⅰ(20점) ▪ 지급여력 비율Ⅱ(10점)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20점)	자 산 건전성 (25점)	▪ 부실자산비율 ▪ 위험가중자산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률	▪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부실자산 관리능력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15점)	-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회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 재보험업무의 적정성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20점)	수익성 (25점)	▪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 ▪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	▪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 유동성비율 ▪ 수지차비율	▪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유동성 관리능력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1 :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 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2 : 계량평가항목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종합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 경영이 이루어짐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 외부의 금융·경제적 불안요인 및 비정상적인 영업여건에 대한 적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 근본적으로 경영이 건전하나 해결가능한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음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 -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제한된 감독이 요구됨
3등급	- 재무상태, 업무수행 및 규정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음 ○ 불리한 영업여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취약점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법규정 위반사례가 많음 ○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위험관리수준이 다소 취약함 - 취약점 시정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4등급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취약점들이 여러부문에 걸쳐 많이 나타남 ○ 시정되기 어려운 주요 문제점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효율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장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음 ○ 다만,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위험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됨
5등급	-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음(4등급보다 더욱 악화) ○ 경영부실 정도와 규모가 매우 심각하여 주주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함 ○ 위험관리수준이 매우 취약함 -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계약이전, 청산, 인수·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

⑧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보험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10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 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최직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위험평가) ①감독규정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사항을 별표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②위험평가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험평가 평가부문 및 종합등급 산정(제5-7조제1항관련)

1. 위험평가 평가부문

평가부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식 및 기능
2. 통합위험관리 체제
3. 보험위험 관리
4. 금리위험 관리
5. 시장위험 관리
6. 신용위험 관리
7. 유동성위험 관리
8. 비재무위험 관리

2. 위험평가 종합등급 산정절차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부문별 평가등급 산정]** ◇ 회사의 각 부문별 위험관리 현황을 감안하여 부문별 평가등급 산정
2단계	**[위험평가 종합등급 잠정치 산정]** ◇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하여 잠정 종합평가등급 산정 ※ 회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특성상 특정 평가부문의 중요성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부문별 가중치 부여 가능
3단계	**[위험평가 종합등급 확정]** ◇ 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 현황 및 임직원과의 면담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평가등급 확정

3. 위험평가 종합등급별 정의

구 분	내 용
1등급 (우수)	◇ 평가사항의 대부분이 우수하고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등급 (양호)	◇ 평가사항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
3등급 (보통)	◇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평가사항 중 여러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4등급 (취약)	◇ 평가사항의 일부가 상당히 취약하고 전체적인 위험 관리 상태가 부진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높음
5등급 (위험)	◇ 평가사항 대부분이 취약하고 전체적인 위험관리 상태가 매우 부진하여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관련 조항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경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록 4 : 분석에 사용된 퇴출 손해보험회사 리스트

<자발적 퇴출 미국 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20265	2004	24939	12661	2002	8079
24660	2004	9815	12084	2002	6814
36374	2003	68778	25208	2002	5734
12220	2003	57094	24945	2002	5568
23930	2003	48636	33642	2002	811
31089	2003	41784	11576	2001	87394
33812	2003	39634	42250	2001	78782
29572	2003	24620	33529	2001	77758
33219	2003	24073	21350	2001	48383
43001	2003	13256	42633	2001	45422
14931	2003	10881	26891	2001	34816
21040	2003	10226	21130	2001	32684
40070	2003	9542	43702	2001	23935
10168	2003	6208	22937	2001	22333
10169	2003	5948	28045	2001	22082
28614	2003	3355	10823	2001	20955
13714	2002	98233	20656	2001	17630
12726	2002	94081	10928	2001	17162
24953	2002	51531	21431	2001	17012
21245	2002	45597	39330	2001	14781
37958	2002	26661	24643	2001	14018
28100	2002	22383	10871	2001	13945
30821	2002	21563	34983	2001	10620
10221	2002	20271	15695	2001	5551
16403	2002	19305	37419	2001	4381
21237	2002	16646	15075	2000	32951
24937	2002	15772	10711	2000	14789
34282	2002	13612	10297	2000	7458
32115	2002	10835	43443	2000	7160
22489	2002	10438			

2004년: 2개
2003년: 14개
2002년: 19개
2001년: 20개
2000년: 4개 Total = 59개

<M&A 퇴출 미국 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11001	2004	26172	40273	2001	94514
23973	2004	17944	20311	2001	86959
25488	2004	5693	40991	2001	70571
11000	2003	94943	30031	2001	70535
31348	2003	31009	34231	2001	45572
11545	2003	25443	36471	2001	33858
21113	2003	20062	18468	2001	16785
19007	2003	10058	25100	2001	7893
18333	2002	10262	25439	2000	15756
10748	2002	2321	10325	2000	1360

2004년: 3개
2003년: 5개
2002년: 2개
2001년: 8개
2000년: 2개 Total = 20개

<비자발적 퇴출 미국 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보험회사 NAIC 번호	퇴출연도	퇴출 전년 자산규모 (천달러)
11085	2004	2056	39462	2001	32506
11218	2003	54539	21725	2001	8919
10678	2003	23951	30205	2001	5339
28720	2003	17461	11035	2001	2612
10668	2003	15526	20150	2001	2307
10249	2003	11764	32360	2001	1651
11012	2003	7045	16276	2001	1099
11013	2003	7037	34975	2001	729
36360	2003	5446	10056	2000	13304
10892	2003	5135	25267	2000	9926
18643	2003	3062	10866	2000	6024
34584	2003	2673	10869	2000	6021
11031	2003	1346	33766	2000	5579
16292	2003	747	46515	2000	5328
10026	2003	667	44296	2000	3059
44890	2002	13892			
40495	2002	1790			
34266	2001	46911			
29092	2001	40131			
28258	2001	37475			

2004년: 1개
2003년: 14개
2002년: 2개
2001년: 11개
2000년: 7개 Total = 35개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Ⅱ)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회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박홍민,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회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신동현,배윤희, 2002. 12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회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회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회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이태열 2004.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2005-1	보험산업의 비젼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Ⅰ) / 김영욱, 차일권, 1998.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Ⅱ)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Ⅲ)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회, 1999.1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2000-2	보험회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김세환,조재현 2005.3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조재현,박정희 2006.3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회남, 2002.4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CEO Report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2000-4 보험회사의 보험회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 2004. 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2004. 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11	손해보험회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 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회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2006-1	생명보험회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명보험회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table>
<tr><th>구분
내용</th><th>법인회원</th><th>특별회원</th><th>개인회원</th><th>연속간행물 구독회원</th></tr>
<tr><td>연회비</td><td>₩ 300,000원</td><td>₩ 150,000원</td><td>₩ 150,000원</td><td>간행물별로 다름</td></tr>
<tr><td rowspan="2">제공자료</td><td colspan="2">-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td><td>-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td><td rowspan="2">-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td></tr>
<tr><td colspan="2">-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td><td>-</td></tr>
</table>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저자약력

김헌수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보험전공)
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조지아주립대학교 방문교수
현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e-mail: briank@sch.ac.kr)

연구보고서 2006-2
보험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06년 4월 일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오 영 수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쇄 소 신 우 씨 앤 피

ISBN 89-5710-035-0 94320 **定價 10,000**